

2026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POSCO PH Solution Compliance Guidebook



존경하는 포스코PH솔루션 임직원 여러분!

포스코PH솔루션은 2023년 창립 이후 포스코그룹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기술 경쟁력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창립과 동시에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공정 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 하였으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포스코PH솔루션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에 참여하여 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임직원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며, 우리 회사의 준법경영 의지가 조직 전반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CP의 운영은 일회성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과 개선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경영 활동 입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가 우리 회사에 더욱 굳건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작된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임직원 여러분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준수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실무 지침서입니다. 본 편람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거래 준수를 생활화하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포스코PH솔루션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PH솔루션

대표이사 **이 형 진**

CONTENTS

posco
포스코 PH솔루션

대표이사 메시지 _2

1. 포스코그룹 경영이념 체계도 _8
2. 자율준수관리자 메시지 _10
3. 포스코PH솔루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현황 _12
4. 내부제보 시스템 운영안내 _15
5. 포스코PH솔루션 임직원 자율준수 실천사항 _17

1.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_20
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종류 _22
3.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_23
4.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_24
5.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 _26
6.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_28

1. CP란 무엇인가? _32
2. CP운영의 필요성 _33
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요건 _34
4. CP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_36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주요 내용 _38

01 개요

02 공정거래제도

0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04 공정거래법

1. 공정거래법 역할 및 구조 _42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_44
3. 부당한 공동행위 _54
4. 부당한 지원행위 _58
5.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_67
6. 대기업집단제도 및 공시 _94
7. 공정거래법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_116

05 하도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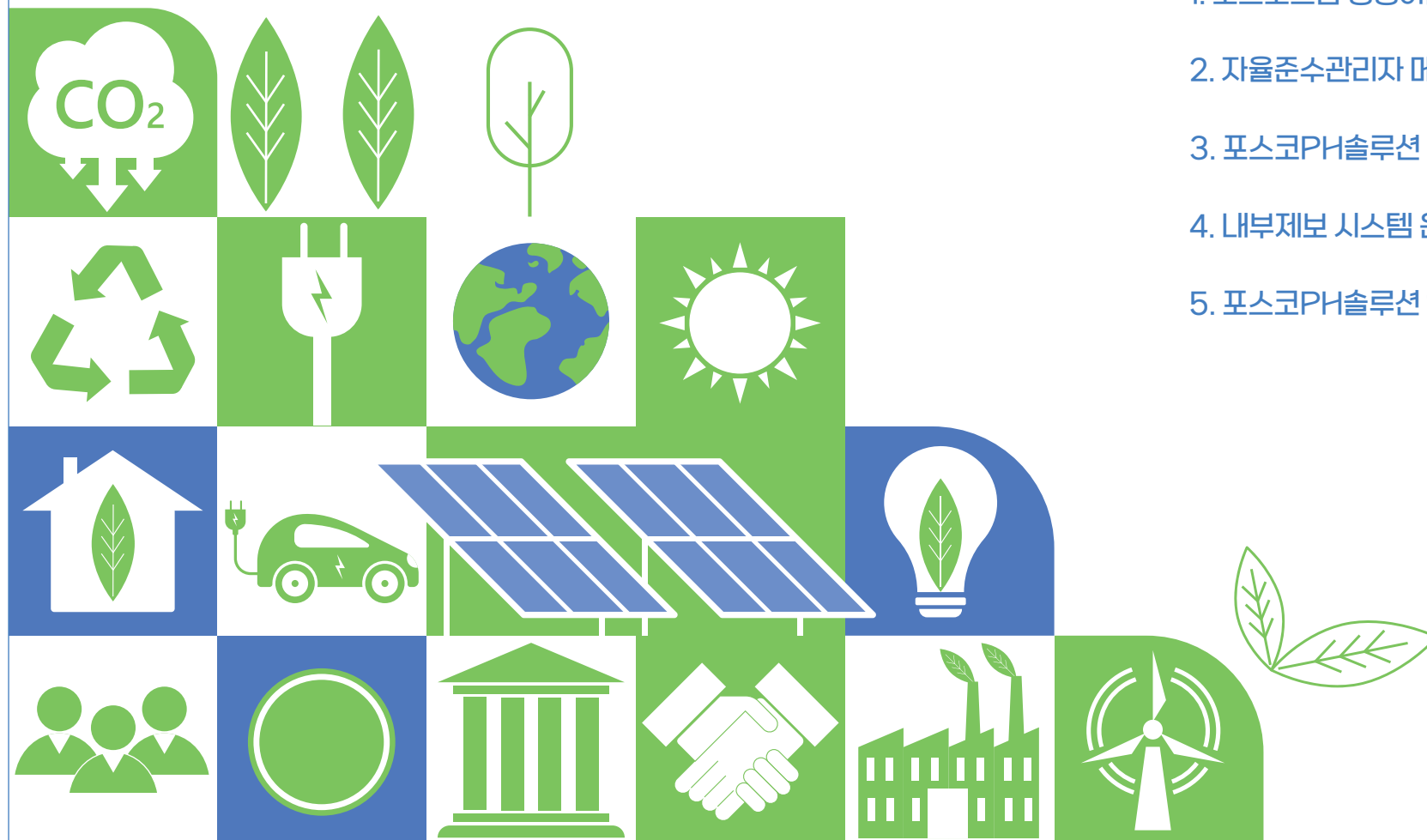
1. 하도급법 목적 _122
2. 하도급의 정의 _123
3. 하도급법 적용 대상자 및 기간 _124
4. 원사업자 의무사항 _130
5. 원사업자 금지사항 _162
6. 발주자 의무사항 _199
7. 하도급법 주요 FAQ _202
8. 위반 시 제재 유형 _205
9. 하도급법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_210

06 상생협력법

1. 상생협력법의 목적 _216
2. 상생협력법 적용범위 _217
3. 상생협력법상 의무 및 금지행위 _218
4.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_219
5. 상생협력법 위반 시 제재 _214
6. 납품대금 연동제 점검 포인트 _222
7. 상생협력법 Q&A _223

이 개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POSCO PH Solution Compliance Guidebook



1. 포스코그룹 경영이념 체계도
2. 자율준수관리자 메시지
3. 포스코PH솔루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현황
4. 내부제보 시스템 운영안내
5. 포스코PH솔루션 임직원 자율준수 실천사항

1. 경영이념 체계도

[포스코그룹]

비전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

전략방향



핵심가치



[포스코PH솔루션]

VISION

Innovation for the Best Solution

'최고의 전기·계장정비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기반으로 혁신을 창조하자'

행동강령



행동강령



안전

Safety All "안전이 전부"

우리 모두가 안전의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체계를 진화시킨다.



성장 역량

Sustainable Growth "지속 성장"

구성원 모두가 끊임없는 개선과 발전적 도전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비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Global Top Tier 정비 전문 사업회사로 성장한다.



ESG 경영

ESG Responsibility "ESG 책임"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며 상호존중과 배려의 기업문화를 구현하여 ESG 모든 영역에서 신뢰받는 기업이 된다.

2. 자율준수관리자 메시지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되어 포스코PH솔루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이석주 정도경영사무국장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내부 관리체계입니다. 우리 회사는 2023년 창립과 동시에 CP를 도입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로서 저는 CP가 단순한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업무 전반에 내재화되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체결, 협력사 관리, 현장 운영 등 업무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비효율적이거나 법적 리스크가 내재된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CP의 실효성은 제도의 완비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여러분의 실천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일상 업무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이러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서이자 실무 지침서입니다. 각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CP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회사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신뢰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율준수관리자

이 석 주

3. 포스코PH솔루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 현황

1)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자문하고, 담당 조직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활동을 지원·감독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임.

○ 주요기능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제재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지원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업무 수행 및 CP 활동 지원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활동의 추진 및 감독

○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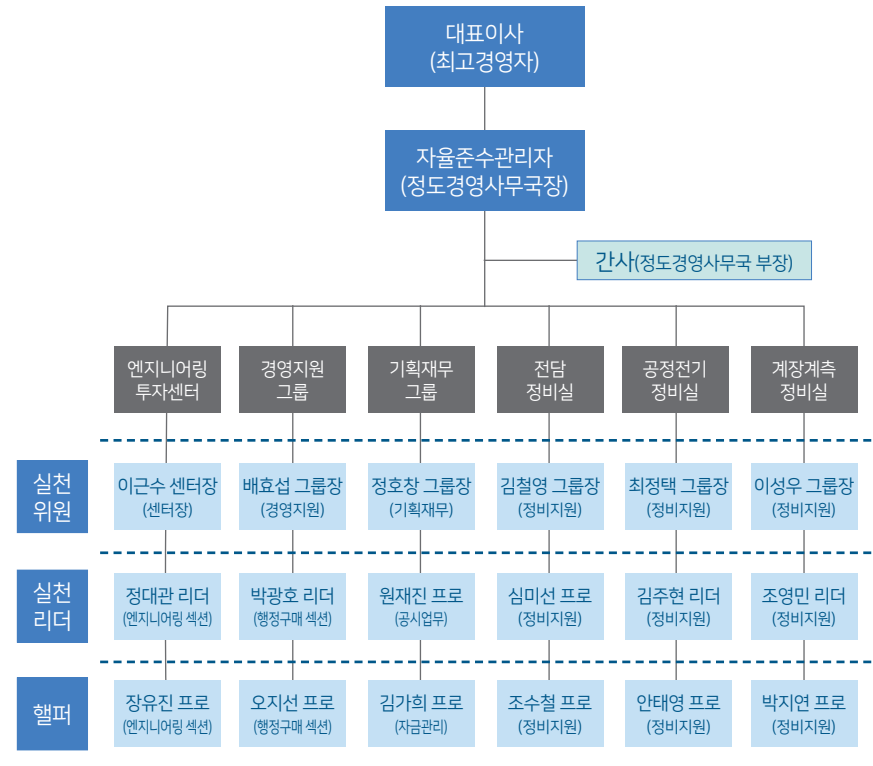
- 최소 반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각 실천위원은 공정거래 실천리더 및 헬퍼를 지정하여 자율준수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자율준수협의회 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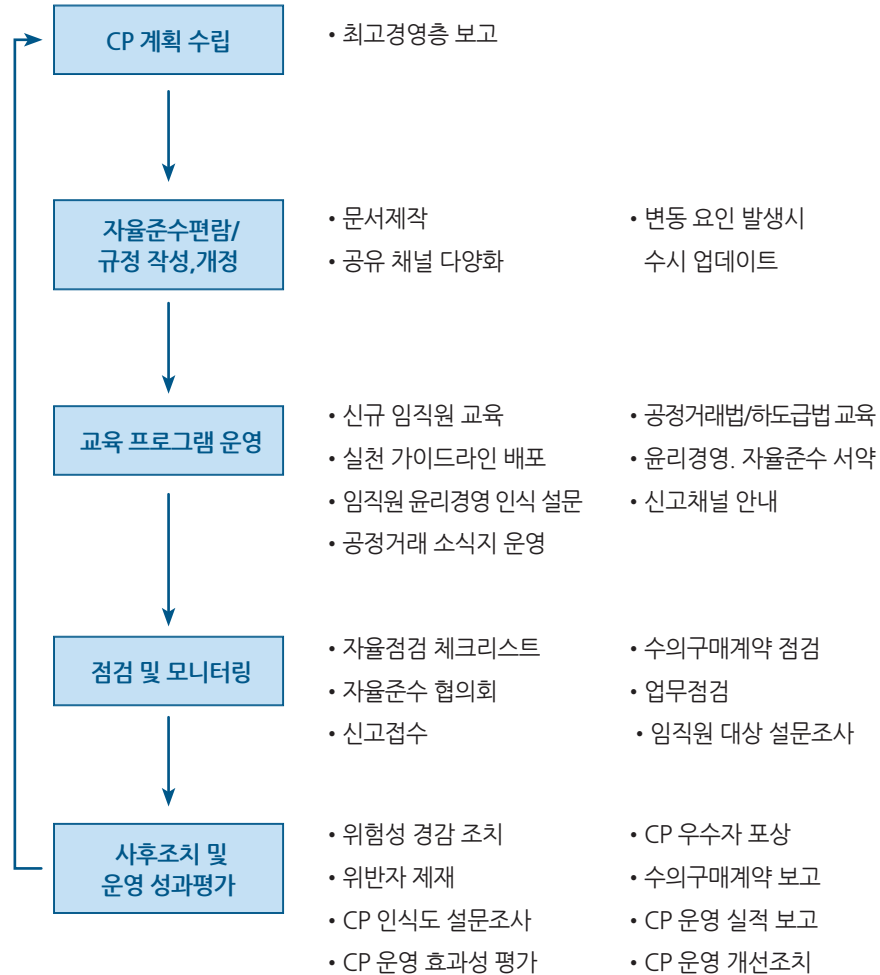
구 분	역 할
자율준수관리자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총괄 운영 ·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련 정책 및 운영계획 수립 ·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재·개정 사항의 CP운영지침 반영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조치 요구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 및 평가 · CP 활동 계획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대응 업무 수행
실천위원	·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실천리더 및 헬퍼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부서 CP활동 관리 · 소속부서 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및 관리

실천리더	· 자율준수협의회 실천위원의 CP활동에 대한 실무 지원 · 부서내 공정거래 관련 교육, 상담 및 자문 수행 · 부서내 자율점검활동 주관 및 점검 결과 관리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헬 퍼	· 실천리더의 CP활동 및 관련 업무 지원 · 부서 자율점검 활동에 대한 사후 확인 및 검증

○ 자율준수협의회 조직도



○ 포스코PH솔루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 현황



4. 내부제보 시스템 운영안내

○ 내부제보 시스템이란?

- 기업 소속 구성원들이 기업에 내재된 불법·부정·비리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1) 제보자의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신고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제3기관 외부 위탁 내부제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며, 제보에 대한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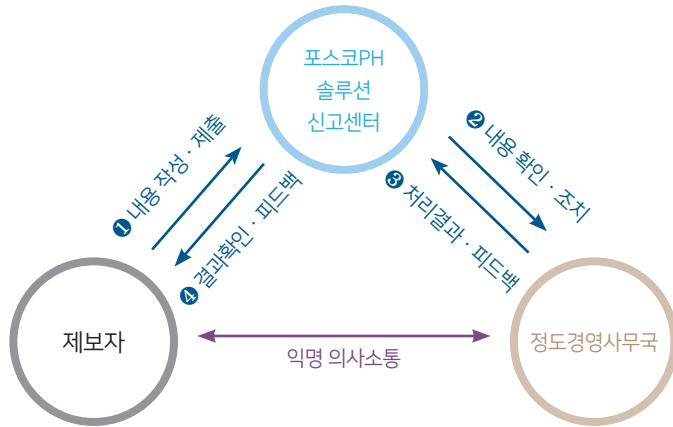
2) 내부신고 시스템 종류

온라인	오프라인
사이버신고 [회사 홈페이지] -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기명/익명을 선택하여 분야별로 신고 접수함	방문 및 면담 (공정거래센터) - 제보자가 공정거래센터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및 상담 접수
이메일 [ph_ethics@poscophsolution.com] - 신고 및 상담 전용 이메일을 통해 신고	유선 상담 (054-222-4744) - 제보자가 정도경영사무국으로 전화하여 신고 및 상담 접수

3) 내부신고 유형

구 분	내 용
비윤리신고센터	임직원의 금품 향응 수수 행위 등 비리사실에 대한 신고
갑질행위신고	임직원에게 겪은 폭언, 폭행 행위에 대한 신고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신고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내외부 이해관계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4) 제보 프로세스



○ 접속 방법

- 당사 홈페이지 접속 (www.poscophsolution.co.kr) → 윤리경영 클릭 → 사이버신고 선택
클릭 → 신고유형 선택 → 작성자, 이메일, 제목, 연락처, 내용 작성하여 신청



5. 포스코PH솔루션 임직원 자율준수 실천사항

○ 임직원 준수사항

포스코PH솔루션은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포스코그룹의 윤리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법과 윤리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활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규범 준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포스코 그룹사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과 명예를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임직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모든 임직원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올바르게 공정한 행동과 자율준수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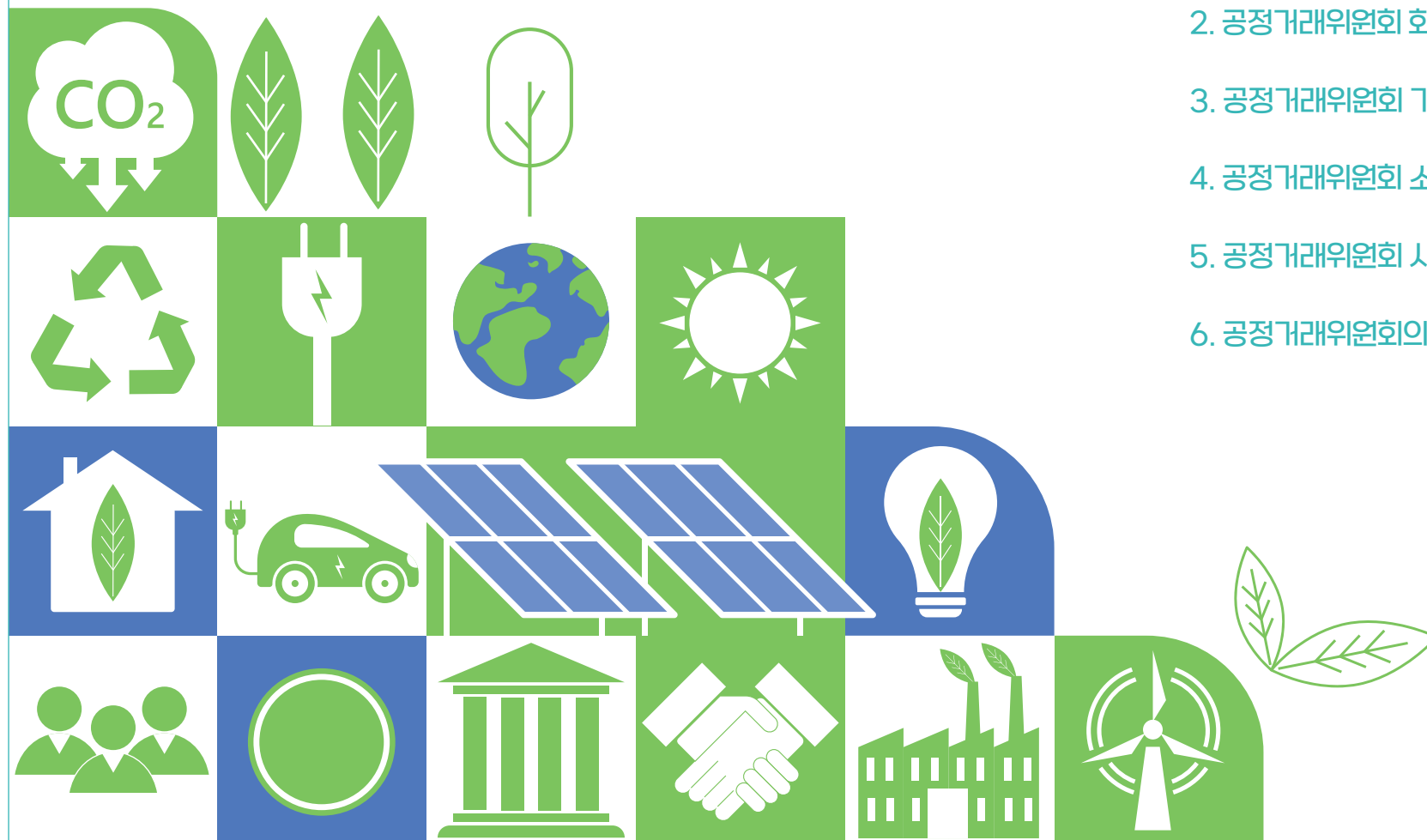
○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사항

구 분	내 용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사항
나	신의성실 및 품위유지	포스코PH솔루션의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품위를 유지하며, 신의성실의 자세로 책임을 다합니다.
	공정 투명한 업무수행	공정거래 관련 법령, 기본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	동료 존중 및 배려	동료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갑질행위,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자산 및 정보 보호	회사의 예산, 무형자산, 유무형 자산을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영업비밀 등 회사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합니다.
	행동기준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윤리와 이익이 상충될 때, 이익보다는 윤리를 택하여 윤리를 모든 판단과 행동에 최우선시 해야 합니다.
협력사	존중	협력사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사의 믿음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상생	협력사와 상생을 통해 동반자로서 상호이익과 발전을 추구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02

공정거래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POSCO PH Solution Compliance Guidebook



1.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종류
3.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4.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5.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
6.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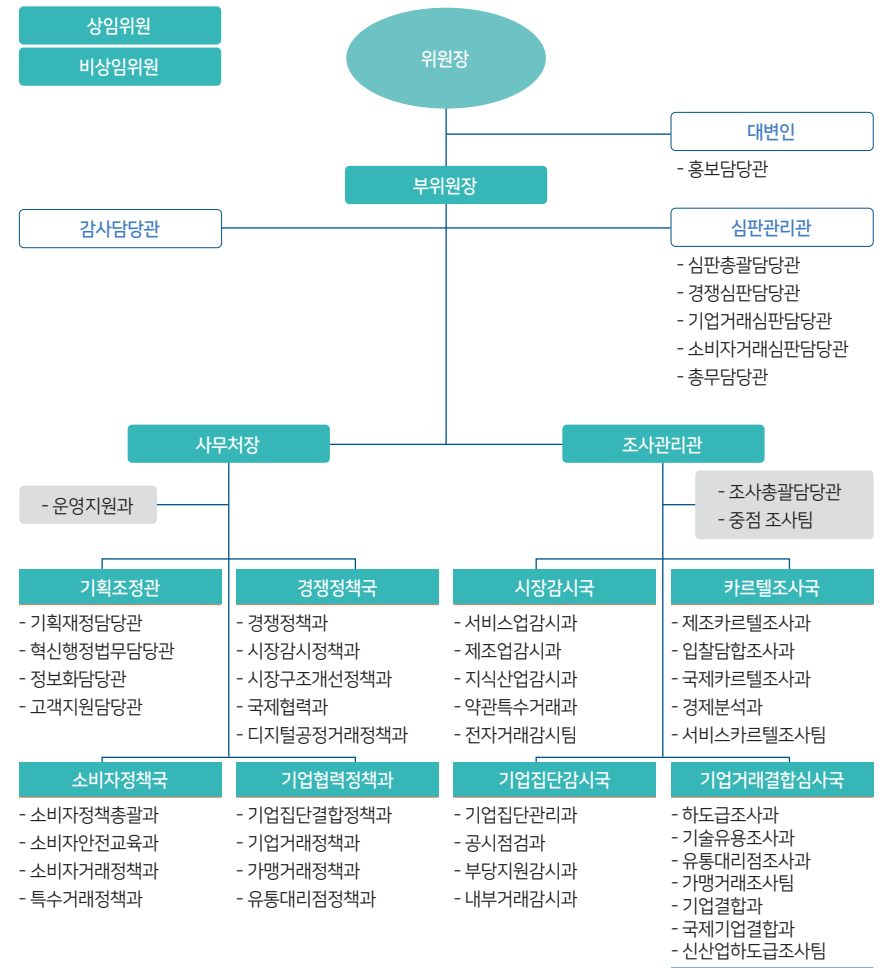
02 공정거래제도

1.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1)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며, 경쟁정책의 수립 및 운영을 담당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역할을 담당함.

- 위원회: 총 9인으로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 사무처 및 지방사무소: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사무처와 6개 지방사무소 구성
- 심의·의결 기능: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사실상 1심 기능 수행



서울사무소	경인사무소	부산사무소	광주사무소	대전사무소	대구사무소
- 총괄과	- 총괄과	- 총괄과	- 총괄과	- 총괄과	- 총괄과
- 경쟁과	- 가맹유통소비자과	- 경쟁과	- 경쟁과	- 경쟁과	- 경쟁과
- 소비자과	- 건설하도급과	- 소비자과	- 소비자과	- 소비자과	- 소비자과
- 건설하도급과	- 제조하도급과	- 하도급과	- 하도급과	- 하도급과	- 하도급과
- 제조하도급과					
- 가맹유통팀					

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종류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되며, 사건의 중요성과 성격에 따라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진다.

구분	전원회의	소회의
구성	위원 전원(9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
주재	위원장	상임위원 중 1인
소관사항	· 법령 및 규정의 제정, 개정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사건	· 일반사건 · 승인, 인가 등에 관한 사항 · 집행정지 결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	위원 전원 출석과 전원 찬성

3.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정책, 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및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부문	정책	규율 대상 및 법률
사업자간 경쟁	경쟁촉진	·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 40조) · 기업결합 심사(공정거래법 제11조)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공정거래법 제4조)
사업자간 거래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 불공정 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 45조) · 하도급 거래(하도급법) · 대형유통업자의 거래 규제 (대규모유통거래법) ·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거래(가맹사업법) ·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대리점법)
사업자와 소비자 거래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안전(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 불공정 약관 규제(약관법)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전자상거래법) · 허위, 과장 광고 규제(표시광고법) ·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방문판매법) · 할부거래 규제(할부거래법)
기업집단 규제	경쟁력 집중 억제	· 지주회사 규제(공정거래법 제18조) · 상호출자 제한(공정거래법 제21조) · 채무보증 제한(공정거래법 제24조) · 금융 및 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제25조)

4.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정책, 기업 간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명		기본개념
경쟁 정책	공정거래법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함
	하도급법	•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 상호 보완적 발전을 도모함
기업 거래 정책	대규모 유통업법	• 대규모유통업 거래에서 납품업자 또는 매장 임차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가맹 사업법	•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대리점법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함
	제조물 책임법	•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 관련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 안전 향상·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소비자 정책	약관규제법	•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
	표시광고법	• 상품,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 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제공을 촉진
	할부거래법	• 할부 계약 및 선불식 할부 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

소비자 정책	방문판매법	• 방문 판매,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후원 방문 판매, 계속 거래 및 사업 권유 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사업자의 책임 등을 규정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법	• 소비자의 자주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

5.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1) 인지단계

- 법 규범 위반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 될 수 있음 (공정거래법 80조)
- 위반행위는 직권인지가 원칙이고, 신고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
- 신고 접수시 예비조사 실시하여 사건화 여부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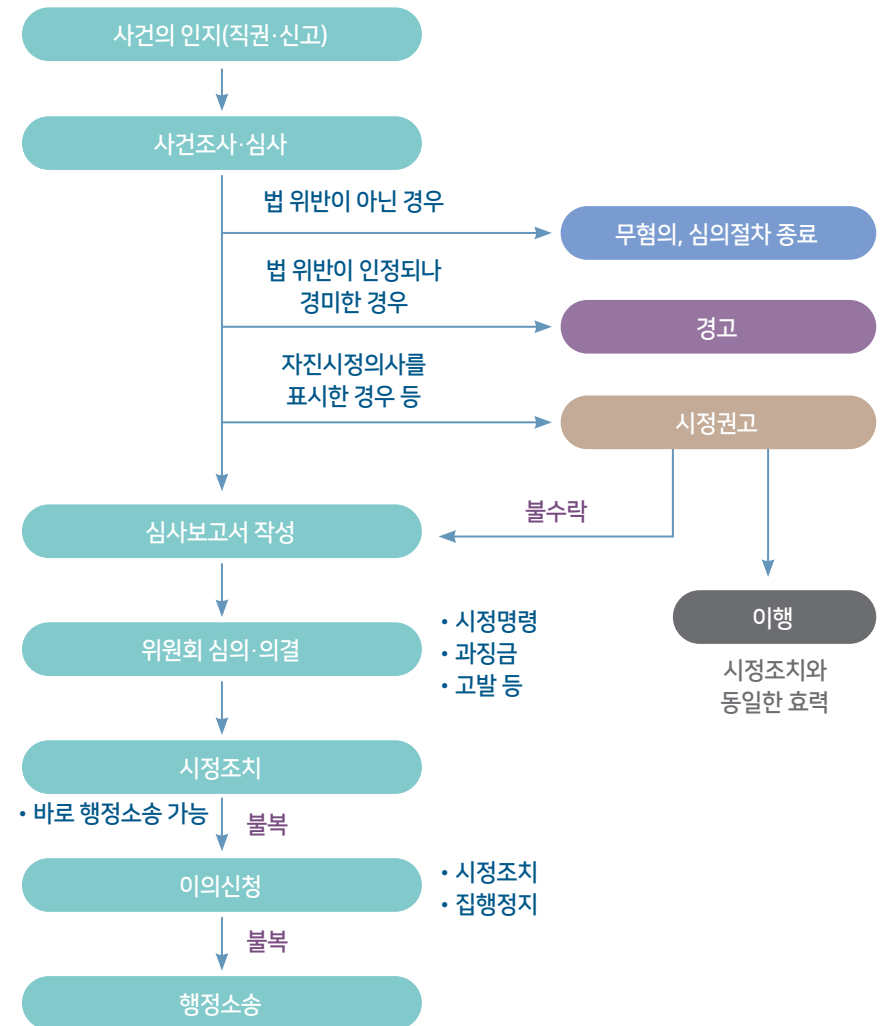
2) 조사·심사 단계

- 사건심사 착수보고(사건보고, 사건명부여) 후 조사관을 배정하여 본조사 실시
-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
-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의견을 포함
-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위원회(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

3) 심의·의결 단계

- 심의는 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되며, 피심인 침 심사관이 출석하여 사실관계 및 의견을 진술
- 심사관은 사건 개요 및 조치의견을 설명하고, 피심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
- 위원들은 질의 및 응답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의를 진행
- 의결은 심의 종료 후 위원들만 참석하여 비공개 회의에서 위법 여부 및 조치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공정거래법 제 65조)
- 위원회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공정거래법 제 99조, 제 100조)

공정한 심결을 위한 주요 제도	
사건 의견청취 절차제도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 등을 대상으로 정식심의에 앞서 주요 쟁점에 대하여 피심인 및 심사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제도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하는 제도
심의 속 개제	심의를 신중하게 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를 1회에 종결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이어서 진행하는 제도
심의 분리제	공동행위와 같은 위반행위 건에 대한 심의 시 특정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과 별도로 심의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경쟁사에 공개될 우려가 있거나 공정위에 협조한 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제도
출석 시차제	사건별 심의시간을 사전에 예측하여 해당 시간에 맞추어 출석하도록 함으로써 피심인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6.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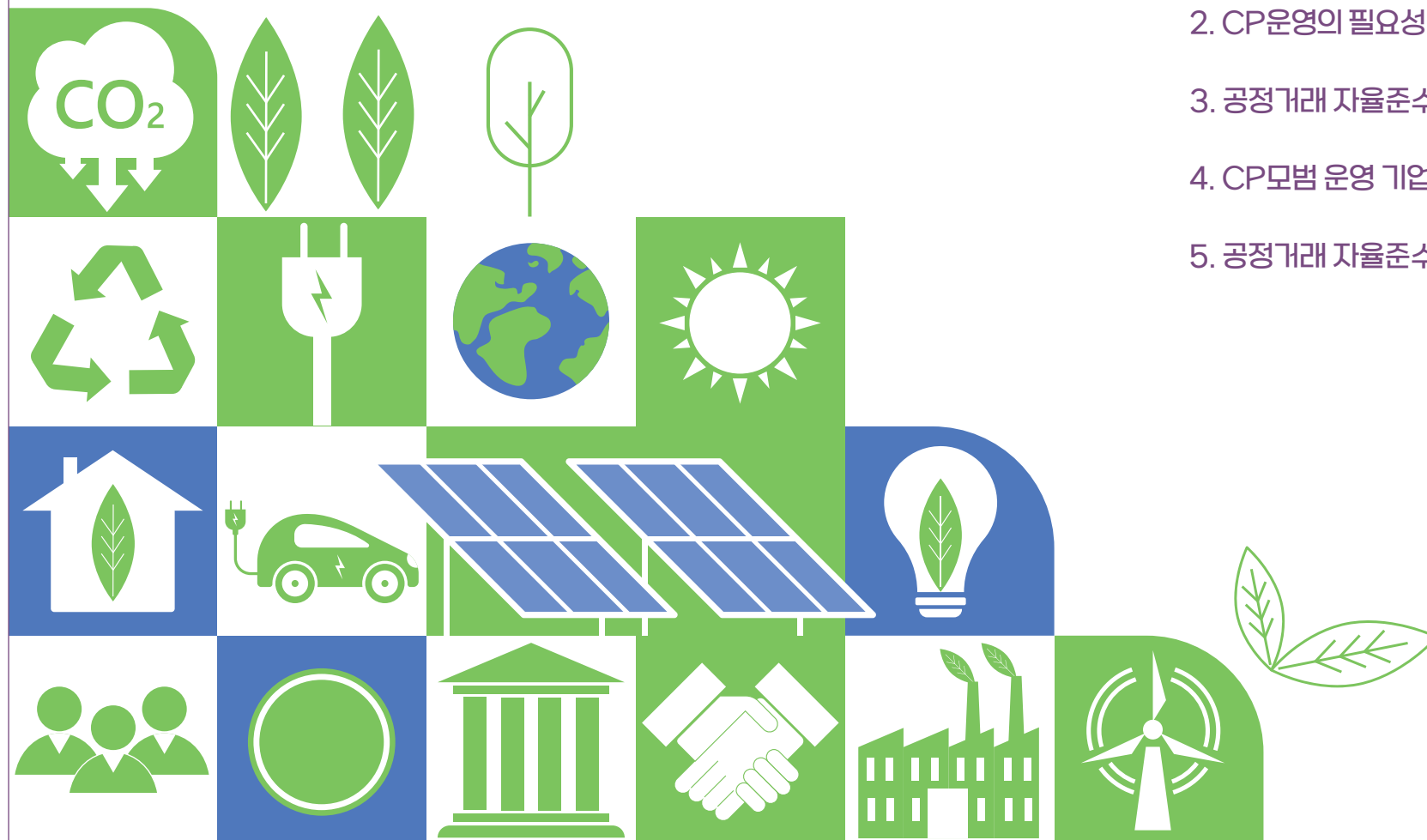
조치유형	내 용
심사 불개시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신고 취하, 이미 처리된 사건의 재인지/재신고 - 법 위반 사항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 종료	-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본 조사 진행 중 심사 불개시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위반을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 실익이 없는 경우 -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위법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무혐의	법령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 (단,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주의 촉구 가능)
종결처리	- 피심인이 사망, 해산, 파산, 폐업 등으로 시정조치 등의 이행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피심인이 회사정리법 상 보전처분 또는 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단, 정상 영업활동 재개 시 사건절차 재개 가능)
조사 등 중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조사 등 중지 -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 정지 - 일시적 폐업의 경우 -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 도피 등에 의한 소재 불명 등 - 조사 등 중지자 명부에 기재하고 점검/관리 (6개월 경과시 종결 처리)
경고	-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 실익이 없는 경우
시정권고	- 심결을 거쳐 위반사항을 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 상태가 소멸된 경우에도 재발방지에 필요한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 가능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각종 공시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고 조사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고발 등	- 시정명령 등과 함께 고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영업정지요청 등 의결 가능 - 고발은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이고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나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시행함

0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POSCO PH Solution Compliance Guidebook



1. CP란 무엇인가?
2. CP운영의 필요성
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요건
4. CP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주요 내용

0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란 무엇인가?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 프로그램'을 말함
- CP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체화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CP는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경제선진국의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CP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심결 및 판결의 양형기준으로도 독점 금지법 및 경쟁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업 경제활동의 핵심 요소로 요구됨
- 우리나라는 2001년 민간 주도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위원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제정·공표하고 CP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였음

- 경쟁당국은 자발적으로 CP를 도입·운영하는 기업들의 운영실적을 평가(CP등급평가)하여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들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감경 등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음

2. CP(Compliance Program) 운영의 필요성

1) 회사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 강화

공정거래는 최근 핵심 경영요소로 자리잡은 ESG 경영 기업 시민 경영이념의 요체로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함



※ ESG
E : 환경 (Environmental)
S : 사회 (Social)
G : 지배구조 (Governance)

2) 법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 사전 예방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 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CP 운영을 통해 법위반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법 위반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을 예방함

3) 대내외 신뢰도 제고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음

4) CP 평가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CP, Compliance Program)의 도입요건

2008년 시행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대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CP 운영에 필요한 사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규정 등록 및 사내 게시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안내

2)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방침 천명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
- CP의 성공은 경영진의 강력한 법 준수 의지에 기함함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준법감시인으로서 강력한 준법의지를 가지고 준법체계 수립을 위한 역할을 실천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 활용

-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행동규범과 준법통제기준으로 자율준수편람을 작성·배포
-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기준 과 절차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 판매 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내부감시체계 구축

-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 및 감사 실적 및 계획을 연 1회 이상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사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 운용
-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최고경영자에게 CP 운영 실적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고 등

4. CP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1) 경감제도란?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 공정거래법 개정("24.6.21. 시행)을 통하여 공정위가 기업들의 CP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과징금 감경 등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



2) CP등급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공정위는 CP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기관)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평가 신청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CP 운영 실적등을 평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기관)별로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평가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됨.

구분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감경	시정조치 감경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
AAA	2년	최대 20%	· 간행물 공표크기 매체수 2단계 하향조정 · 사업장 공표 및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2년 연속 AA 이상의
AA	1년 6개월	최대 15%	· 간행물 공표크기 매체수 1단계 하향조정 · 사업장 공표 및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등급을 받은 기업(기관)
A	-	-	-	평가증 수여

CP의 운영은 기업의 준법경영문화의 정착은 물론 경쟁력 강화와 신뢰도 제고,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감경, 공정거래협약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에서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평가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음

※ CP 평가 분야별 혜택

- 공정거래협약 평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CP를 도입 운영하고 CP 등급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
- 공공기관경영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비계량 공통지표의 하나인 사회적 기여부분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여부가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대국민 및 고객관리 관계(CRM)에 대한 공정한 거래활동 요소로 요구
- 기업지배구조 평가: 국내 상장기업 대상 ESG평가의 사회부문 평가 항목 중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최대 8점의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상장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주요 내용

1)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천명

- 최고경영자는 임직원 전원에 대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년 1회 이상 천명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 관련 업무 위험성 평가

- 공정거래 관련 업무 위험성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법령의 제·개정 또는 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 발생 시에는 별도로 실시 할 수 있다.

4) CP감사제도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CP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 검토 및 확인
- (2) 내부 보고서, 각 종 자료 검토 및 확인
- (3) 기타 직무행위에 대한 CP기준 절차 및 법령 위반 여부 점검

5)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 지침에 따라 자율준수협의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참석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6) 임직원 포상 및 제재

-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에 기여한 임직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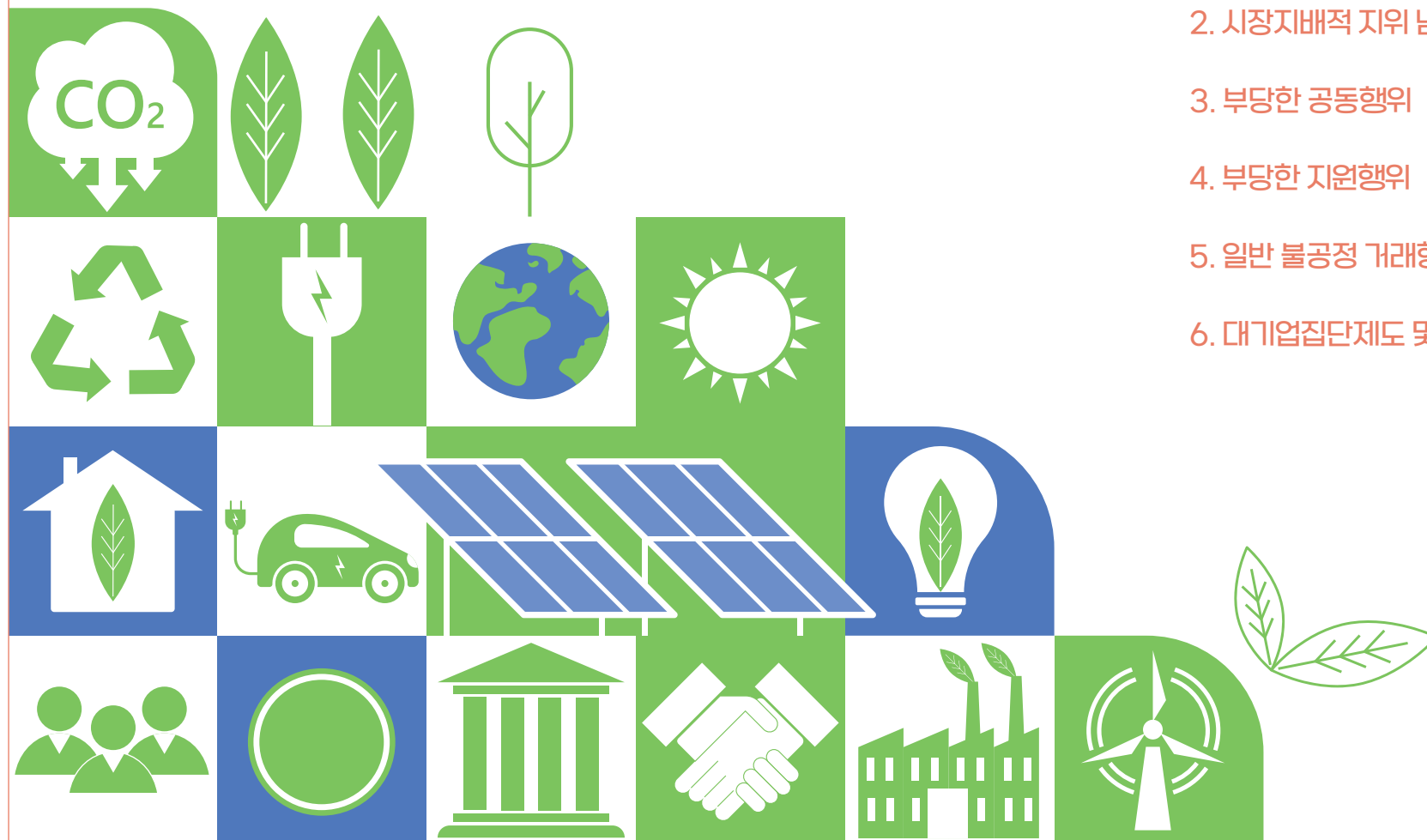
7) CP 운영 효과성 평가 및 개선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효과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차년도 CP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04

공정거래법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POSCO PH Solution Compliance Guidebook



1. 공정거래법 역할 및 구조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3. 부당한 공동행위
4. 부당한 지원행위
5.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6. 대기업집단제도 및 공시

04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공정거래법의 역할 및 구조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업은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음

기업의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 수행 시 회사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정 거래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공정거래법상의 제규제들은 크게 '구조규제'와 '행태규제'로 구분

'구조규제'는 구조적인 시장결함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로, 시장경쟁의 회복을 통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함

'행태규제'는 개별기업 또는 사업자인단체의 경쟁 제한적 거래행태 및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보다 사회적, 정치적 정책목표의 성격을 가짐

시장구조의 개선 [구조규제]	거래행태의 개선 [행태규제]
-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제한,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 경제력 집중 억제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채무보증 금지 및 보증해소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가격남용 / 출고조절 금지 다른 사업자의 사업방해 / 신규사업자의 진입 방해 등 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공동으로 가격 결정, 유지, 변경 금지 공동으로 거래조건, 대금지급조건 결정 금지 공동으로 생산, 출고, 거래 등의 제한 금지 -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특수 불공정 거래행위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개념

- 일정 거래분야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가격남용, 출고조절,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제2조 제3호)

○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의 판단 기준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 판단하여 시장지위를 가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음

- 시장점유율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5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75% 이상 사업자 (단,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자 제외)
-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및 정도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지며, 신규 진입 가능성은 법적·제도적 진입장벽의 유무, 필요 최소한의 자금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

-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당해 사업자에 비해 경쟁사업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지며, 경쟁사업자의 규모를 판단할 때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생산능력, 원재료 구매비중 또는 공급비중, 자금력 등을 고려
-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사업자 간 가격·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한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음
- 유사품 또는 인접시장의 존재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짐
- 시장봉쇄력
당해 사업자의 원자재 구매비율이나 공급비율이 50% 이상(3개 이하 사업자 75%)에 해당 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짐
- 자금력
당해 사업자의 자금력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크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력의 판단에는 자본 또는 부채의 동원능력, 매출액, 이윤, 순이익률, 현금흐름, 자본시장에서의 접근 가능성, 계열회사의 자금력 등을 고려함
- 기타 고려요인
거래선 변경 가능 여부,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등

3)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법 제4조)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
 - ※ 단,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자는 제외
 - ※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

■ 가격남용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9조 제1항)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통상적 수준)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 가격남용 행위의 판단기준

- 가격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함
- 동종 또는 유사 업종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시장 또는 인접시장을 포함하여 고려함
-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
각각의 비용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당해 사업자의 재무상황, 비용의 변동 추세, 다른 사업자의 유사항목 비용지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수급의 변동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객관적 변동을 말하며, 이 경우 상당기간 동안 당해 품목의 수요 및 공급이 안정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함
-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재료비·노무비·제조경비·판매관리비·영업외 비용 등의 변동을 말함
- 현저한 상승 또는 근소한 하락
최근 당해 품목의 가격변동 및 수급상황, 당해 품목의 생산자 물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인상률, 당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의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시키는 행위
- 원자재 가격 등 제품 생산가격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소폭 인하하는 행위

■ 출고조절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9조 제2항)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 출고조절 행위의 판단기준

- 최근의 추세
상당기간 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 유통 기한, 수급 변동요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
-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 출하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함(단,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 유무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증가 여부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의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출하 여부
 - 원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 정상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서 타 사업자에게는 동 원재료의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함

[심결례]

사례
이

(주)엘에스 등 34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은 한전에서 발주하는 지하 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참여사들 간에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 예정자를 선정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평균 99.4%)받은 후, 배분 비율대로 참여사들 간에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시행하였음

심결
요지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시장에서 11년간(1998~2008년)에 걸쳐 고질적으로 이루어진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물량배분 및 낙찰가격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위반 행위에 해당함

시정명령 32개사(전선조합 포함)과징금 386억원

※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신규 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소비자의 재산상·신체상·정신상의 제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9조 제3항)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의 판단기준

- 간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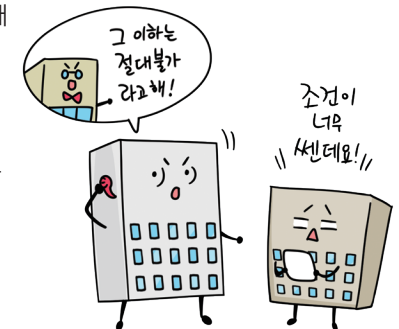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방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

-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행위
-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경쟁력을 침해하기 위한 특허권 침해소송 제기하는 행위



[심결례]

사례
이

구글은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이하 '구글 플레이') 1면 노출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여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경쟁앱마켓(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였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림.

심결
요지

구글이 게임사들에게 제공한 피처링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은 앱마켓 흥행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독점 출시와 연계한 행위는 게임사들의 거래상대방 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 사업자인 원스토어의 신규 게임 유치를 방해하였음. 실제로 구글의 이러한 배타적 조건부 거래 행위로 인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대형 신작 게임들이 원스토어에 출시되지 못하면서 원스토어의 시장 점유율과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반면 구글 플레이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음.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현저히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됨.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원 부과

※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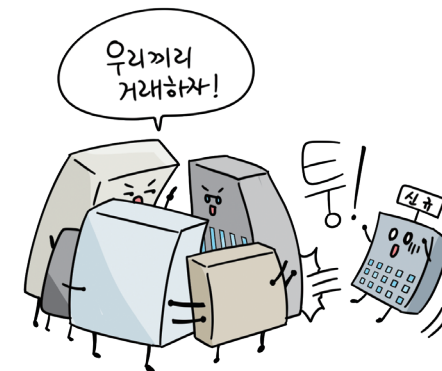
- 우리 회사 이외에 원자재를 구매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원자재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판매점 등 우리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고객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행위(법 제5조의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9조 제3항)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제한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신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행위의 판단기준

- 기타 다음의 행위로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또는 기간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대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절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의 수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및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법 제5조의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9조 제5항)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의 판단기준

- 낮은 대가의 공급 또는 높은 대가의 구입
 - 염가 또는 고가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의 수량 및 기간, 품목의 특성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행위의 목적,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유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 및 자금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

- 기존 사업자의 면허권 등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여 경쟁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시설, 기술, 자본 및 원재료 등의 제공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공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도록 요청 또는 강제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주요 시장에 상당 기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집중 판매하는 경우
- 권장 소비자가격(가격에 대한 명칭에 관계없이)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과다하게 높거나 낮게 표시하는 경우
- 기타 소비자의 재산상·신체상·정신상의 제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심결례]

사례 01	국내 PC용 CPU 시장에서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인텔은 2002년 3/4분기부터 2005년 2/4분기까지 국내 CPU 시장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국내 PC 제조회사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경쟁사업자인 AMD사의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음
심결 요지	인텔이 국내 PC 제조회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는 국내 PC 제조회사들의 거래상대방 선택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였고, 실제로 피심인과 경쟁사업자인 AMD사의 시장점유율 수준 및 추이(AMD사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부터 2006년 기간 대부분 10%를 넘지 못하였고 특히 AMD사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 피심인은 PC 제조회사들에게 새로운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AMD사의 점유율은 다시 하락)를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억제하는 등 경쟁을 현저히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됨
과징금 총 266억원	

3. 부당한 공동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개념(법 제40조 제1항)

- 부당한 공동행위(Cartel, 담합)란, 부당하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말함

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요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여 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둘 이상의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야 함
- 합의의 존재
 - 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는 계약·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됨

※ 합의의 개념

-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 간 의사 합의의 의미
(합의만 있고 실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
- 합의는 계약·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 ☞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도업체가 가격인상하고 후발업체가 동조하여 가격인상하는 의식적 병행행위일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정황 증거(정보 교환, 만남의 증거 등)가 있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 경쟁제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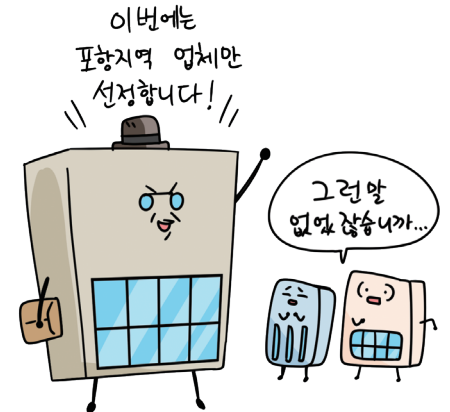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간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가 가격, 수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야 함

2) 유의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됨
- 과당 경쟁 방지, 경영 압박에 대한 업계의 자구책, 정부 고시가격 준수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 원재료·상품을 구입하는 제조·유통업자의 구매 시의 공동행위도 문제가 됨
 - ①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는 경우
 - ② 특정 공급자로부터만 구매하기로 하는 경우
 - ③ 공급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강요하기 위해 공동구매하기로 하는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는 일시에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성립함

3)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용역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상품·용역의 생산·거래 시 임의의 종류·규격 또는 제품의 종류·규격 제한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는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법 제40조 제5항)

- 부당한 공동행위는 명시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정황증거가 있으며 행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정황증거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 비밀회합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사업자 간 가격이나 산출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거나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을 갖는 경우
- 공동으로 행해져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행해졌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 인상률, 어음 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르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폭이 동일한 경우
- 당해 산업구조 상, 합의가 있었다는 것 이외에는 행위의 일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또는 판례에서 인정된 정황증거

- 합의사실을 나타내는 회사 내부 문건(단, 합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실제행위와도 일치한다면 합의에 대한 직접적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실무자, 임원모임 또는 협의체 등에서 가격인상 등을 논의한 사실
- 가격인상 정보 또는 영업방식을 사전 교환한 사실
- 원가나 비용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시기에 동일한 가격수준, 같은 인상률로 가격을 인상한 사실
- 시장구조, 과거 법 위반 전력 등
- 모임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심결례]

사례 01	11개 고철 수요업체와 한국철강협회가 모임을 통해 영남 및 경남지역의 고철 구매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음(구매담합)
심결요지	국내 고철 수요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철 수요 업체들이 모임을 통하여 고철 구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시켜 고철 구매자 간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억제하고 고철시장 내에서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어렵게 하였음. 이는 국내 고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국내 고철 구매비율 설정을 주관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됨

시정명령, 과징금 12억원 부과

사례 02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주)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가 담합하였음.
심결요지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 예정 회사를 정했으며,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 배분), 제8호(입찰 담합)에 위반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됨

시정명령, 과징금 460억 4,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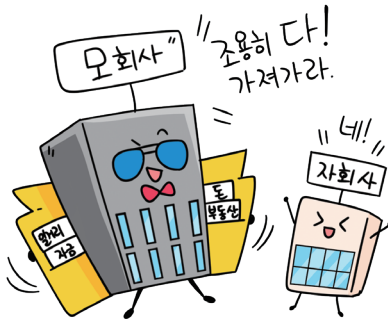
4. 부당한 지원행위

사업자 간, 특히 계열회사 간의 부당한 지원행위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막거나, 경쟁기업의 압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의 유지 및 확장수단이 되고 있으며, 또한 피지원기업이 위치한 개별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도 침해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52조, [별표 2]9)

1) 개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상품·용역, 인력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면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통행세)



2) 부당한 지원행위의 판단기준

부당한 지원행위는 지원행위 여부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

- 지원행위 여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 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 보다 높거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 ☞ 정상가격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 방법

- '자금' 지원 행위에서의 정상가격(개별 정상금리) 산출 방법
 -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 간 자금(가지급금, 대여금 등) 거래와 거래 조건이
 - ①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 객체와 특수 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②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 객체와 특수 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③ 동일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 적용
- '자산·상품·용역' 지원 행위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
 - 해당 자산(유가 증권, 부동산, 무체 재산권 등) 상품·용역 거래와
 - ①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 ②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
 - ③ 만일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

-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 ①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
- ②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유지가 가능하여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경우

※ 예외사유 :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으로 거래 목적달성에 불가피한 경우

-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 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경우, 지원 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 시장을 활용한 지원 행위를 통해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지원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 부당성이 인정됨

- ①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또는 강화할 경우

- ② 지원객체가 속하는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④ 지원객체가 속하는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⑤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3) 지원행위의 예시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 ① 회계처리 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현금 등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 지원객체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는 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태만히 한 경우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 ②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기타 자금의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가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간에 지원주체의 지원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보다 낮은 경우에 성립함
- ③ 다만,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거래의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의 차이가 정상금리의 7% 미만인면서, 해당 자금거래의 연간 거래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의 차이가 정상금리의 7% 미만인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한 연간 지원금액(이익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보지 아니함
 - 자금 제공의 규모, 기간, 금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의미하게 제고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 기업집단의 경영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지원행위의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지원금액이 극히 미미하여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 ① 역외편드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주식 고가매입]
- ②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 [주식 고가매입]
- ③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 [주식 고가매입]
- ④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한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⑤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 ① 지원객체에게 공장 매장 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②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 상품 용역을 거래한 경우

- ①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②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받지 아니한 경우
- ③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④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
- ⑤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유지가 가능하여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 되는 경우

- 인력을 제공한 경우

- ①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한 경우
- ②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 ①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①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②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해 자생력 배양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지분 100%를 소유(또는 동일인이 양자 지분 100% 소유)하는 경우로서, 지원이익이 배당 등을 통해 내부 환수되어 자산의 외부 유출이 없고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하다면 부당지원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한계기업의 퇴출 지연 등 구조조정을 방해하거나 법령 회피·탈세 또는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특정사업자에 대해 조달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 지원객체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하였음에도 주식을 인수하는 행위
-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격이 추가추이, 추가전망,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상당히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에 참여하거나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인 등이 자기의 지분을 현저히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게 공장, 매장, 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한 경우
- 인력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심결례]

사례 01	롯데피에스넷(주)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舊 롯데기공)을 통하여 구매한 사실이 있음. 위 기간 동안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는 네오아이씨피로부터 ATM기 3,534대를 66,635백만원에 매입하여, 롯데피에스넷에 70,786백만원에 판매함.
심결 요지	롯데피에스넷(주)의 간접구매 방식은 당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불필요한 유통비용만 증가하였으며 어떠한 경제적 효율도 발생하지 않음. 롯데알미늄은 아무런 실질적 역할 없이 형식적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중간마진을 챙겨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됨. 이는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 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됨

시정명령, 과징금 6억 4,900만원

사례 02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 및 현대제철(주)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자신들 제품의 생산·판매에 부수하는 완성차 배달·탁송, 철강운송 등 각종 물류업무를 새로 설립된 계열회사인 글로벌스(주)에게 사업양수나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상당부분 몰아주기함.
심결 요지	글로벌스(주)에게 몰아준 운송물량은 지원주체의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화물운송주선업 시장 1위 사업자와 비교한 크기, 화물운송주선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크기, 글로벌스(주)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며,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글로벌스(주)에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함.

시정명령, 과징금 총 85억원

[심결례]

사례 03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21억원을 차입하는데 원고 웅진홀딩스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예금 600억원과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무담보 대출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인 5.50~5.87%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자금지원이 있었음.
심결 요지	법원 피고(공정위)가 그 지원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거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은행이 웅진폴리실리콘 또는 웅진실리콘과 신용등급이 비슷한 회사와 무담보 대출 거래를 한 실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실제 적용된 금리와 일반정상적인 6.83~7.07%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시정명령, 과징금 총 34억원

Q

계열회사 간의 제반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A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서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행위와 부당지원 행위가 주로 문제됨. 따라서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회사와 차별하여 계열회사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아울러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자금·자산·인력 등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Q

계열회사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소규모 인원이라 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지?

A

특정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원을 파견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다수 계열회사들이 동시에 특정 계열회사에 인원을 파견한다면 인력을 통한 부당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당지원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비용 정산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음.

Q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거래 시 특별한 역할이 없는 해당 계열회사를 거래 중간단계에 포함 시켜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A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 거래하면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중 '통행세 지원행위'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5.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자는 거래 개시 또는 지속 거래 여부,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면 법에 위반됨.

* 단발성 계약이나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우리회사에 의존도가 높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 거절은 법 위반 위험이 있음.

■ 공동의 거래거절(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2조, [별표 2]1.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1)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 거래계속의 거절 등이 포함됨

-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

☞ 회사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



2) 공동의 거래거절 위법성 판단기준

-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3) 공동의 거래거절 예외기준

- 재고부족,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사전에 합리적인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거래거절(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2조, [별표 2]1.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1)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사업자 단독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공동의 거래 거절 대상 행위와 동일
-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

2) 기타의 거래거절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거절 물품 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

3) 기타의 거래거절 예외기준

- 계약기간의 만료나 거래상대방의 계약조건 불이행 등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최고한 후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우리 회사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및 업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각별한 유의가 요구되는 조항임

※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주문하지 않은 상품의 구입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거래를 중단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독과점지위의 강화, 계열회사의 지원, 끼워팔기, 재판매가격 유지 및 배타조건부 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연계된 경우

[심결례]

사례
01

포스코는 협력작업 계약에 따라, 선재공장에서 제품소재 및 제품의 입출하·절단·연마 등의 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는 화성기업(주)의 대표에게 면담요청을 하여 협력작업에 대한 사업양도를 요구하였으며, 화성기업(주)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9년 12월 3일 3년 기간으로 연장한 재계약의 만료시점인 2000년 3월 31일에 거래를 종료하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

심결
요지

화성기업(주)는 포스코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를 포스코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본 협력작업과 같은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포스코 이외의 거래처를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포스코는 화성기업(주)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으며, 또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협력작업에 대한 사업양도를 강요한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에 해당함.
계약자유 의 원칙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재계약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자율적 판단사항이나, 본 건은 협력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설비 규모, 대체거래선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거래가 전제 또는 예상되는 계약관계로서 사업양도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타당한 사유 없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계획임을 통보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함.

시정명령 서면통지 명령(30일 이내 시정명령 사실을 협력작업 관계에 있는 모든 거래업체에 서면통지)

사례
02

(주)녹십자는 의약품 ‘정주용 헤파빅’의 국내 독점 생산·공급자로서 2010년 서울대병원 납품업자인 도매상 A의 제품 공급 요청을 물량 한정을 이유로 거절하였음, 도매상 A는 서울대병원에 납품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타 도매상으로부터 헤파빅을 비싸게 구입하여 손해를 보며 납품함

심결
요지

2010년 거래거절 당시, (주)녹십자는 전년도 초과 생산량이 존재하였음을 고려시 도매상 A에게 공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독점 생산 의약품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됨

시정명령, 과징금

Q

납품업체들이 공동으로 특정점에 대한 구매를 거부 또는 제한해 줄 것을 우리 회사에 요구하고 이에 따라 우리 회사가 특정점에 대한 구매를 중단할 경우 위법인지?

A

납품업체들의 행위는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사업자에게 거래거절을 하게 한 행위로서 위법이며, 우리 회사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점에 대한 구매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위법임.

Q

거래종료 당연사유가 아닌 회사 내 정책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정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하는지?

A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모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기간을 부여해야 함

Q

거래중인 납품업체들이 공동 그룹을 결성하여 그룹의 자격으로 무리한 거래 조건변경 등을 제시할 경우 그 납품업체들과 거래를 중단하면 법 위반인가?

A

거래여부의 판단은 가격이나 거래조건, 거래수량 등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무리한 거래조건변경을 요구하여 더 이상 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거래를 거절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Q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최고 없는 계약해지를 규정할 경우 계약의 효력 여부는?

A

법적인 계약의 효력 여부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이나, 포괄적 계약해지 사유와 최고 없는 계약해지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우리 회사의 경우 계약내용에 상관없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됨.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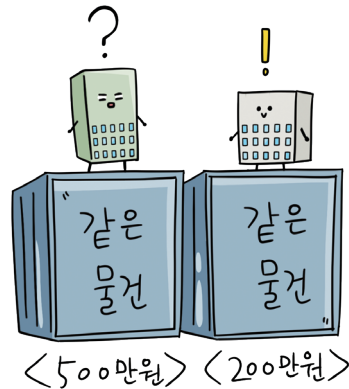
납품업체의 납품실적 부진 또는 규정위반 등이 발생하여 납품업체와의 계약기간 중 납품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A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을 위반하여 당사의 신뢰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납품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중단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음.

○ 차별적 취급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적 설정이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 가격차별(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2조, [별표 2]2.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가격차별 예외기준

- 가격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한 경우

1) 거래조건 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수량, 품질, 규격, 대금지급조건, 인도조건, 수송조건, 리베이트, A/S조건, 하자 책임기간 등)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가격·거래조건 차별의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가격·거래조건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 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가격·거래조건 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가격·거래조건 차별 정도가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에 미달하는지 여부
- 가격·거래조건 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가격·거래조건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2조, [별표 2]2.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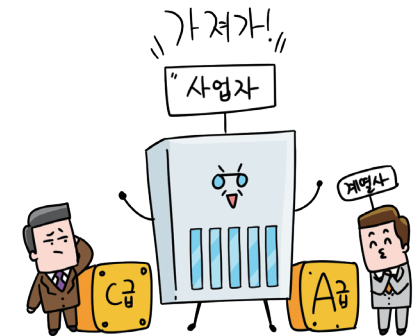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위법성 판단기준

-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 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예외기준

-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등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차별 취급하는 경우
- 효율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집단적 차별(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2조, [별표 2]2.라)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반드시 행위가 발생해야 함)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경우

* 집단적 차별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 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집단적 차별이 지속적이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 집단적 차별 예외기준

- 운송비용, 판매비용, 고객관계의 지속기간, 거래량의 다과,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 등에 차별을 두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있더라도 비영리기관이나 자선단체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계열회사의 제품이 가격, 품질 및 결제조건 등에 있어 비계열회사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계열회사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경우

※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구매물량이나 거래기간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에게만 지불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는 행위
- 우리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래상대방과 그렇지 않은 상대방을 차별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행위
- 계열회사와 거래하면서 비계열회사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낮은 대가를 받는 행위
-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는 어음으로 대금을 수령하면서 비계열관계에 있는 업체에게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상품을 구입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사규, 공문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계열회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는 경우
-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계열회사에 대해 같은 조건으로 구입하는 비계열 회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행위

[심결례]

사례 01	포스코는 1994년 1월~1995년 5월 중 열연코일을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비계열사인 동부제강(주) 등 5개사에게는 제품 출고 전에 선수어음 및 외상 30일로 받는 반면 계열회사인 (주)포스틸로부터는 제품출고 후 70일 만기어음으로 받은 사실이 있음.
심결 요지	비계열회사인 동부제강(주) 등 5개사로부터는 선수어음을 받은 반면에 계열회사에게는 70일 만기어음을 수령함으로써 계열회사에게 판매대금 결제기간을 최고 70일까지 유리하게 한 행위는 거래규모, 판매가격 등 제요인을 고려하여 검토해 볼 때, 경쟁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차별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위하여 판매대금 결제조건에 관하여 현저하게 차별 취급한 행위로 인정됨.

시정명령 공표명령(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1회 게재)

사례 01	(주)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자사(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
심결 요지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이 계열 배급사와 자사 영화를 유리하게 차별 취급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됨.

시정명령 검찰고발, 과징금 CJ CGV(32억원), 롯데시네마(23억원)

사례
03

한국아스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사업자에게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하였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공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 처음으로 가공비 6.7%인상함.

심결
요지

한국아스트라비엑스의 행위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의 상승은 업종에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이나 특정 공급사업자들에게만 가공비를 인상하여 주는 행위는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시정명령

사례
04

금호터미널(주)는 2006년 10월 ~ 2009년 6월까지 광주 → 서울노선에 대해 임시차 운행 및 결행 관련 배차입력 업무를 자신의 계열회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에게 일임하여 계열회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임시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직접 결정·시행하는 반면,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자신의 계열회사와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함.

심결
요지

임시차 운행 및 결행은 고객의 수요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업방식으로 이를 위해 배차입력 업무가 선행되어야하며, 배차입력 업무를 자신의 계열회사인 금호산업주식회사에게 일임함으로써 계열회사의 임시차 운행 및 결행을 용이하게 한 반면,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조건 및 거래내용면에서 계열회사에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차별한 행위에 해당됨.

시정명령

Q

물품을 구입하면서 비계열회사인 A사가 계열회사인 B사보다 견적가격을 싸게 제시하였음에도 B사와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법 위반인가?

A

A사가 공급하는 물품이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불량률이 높은 등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단,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취급이 될 수 있음.

Q

협력업체를 매 분기별로 평가하고 이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대금결제를 차별화할 경우 문제가 있는가?

A

인센티브 성격의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위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Q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격이나 기술수준이 별 차이가 없을 경우 계열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A

거래상대방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계열회사를 선정하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음.

Q

대량구입과 소량구입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가?

A

판매수량, 거래기간 및 금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음.

Q

우리 회사의 구매정책과는 무관하게 물품 판매업체의 영업정책상 우리 회사의 우수한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다른 회사에 비해 대금결제 조건을 유리하게 해주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만일 계열회사가 그런 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한다면?

A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항상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거래조건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음. 거래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당해 회사의 영업정책이나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음.

Q

동일한 제품을 경쟁이 낮은 곳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점에게 판매하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 여부?

A

기본적으로 판매가격은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수요가 매우 많은 지역에서 판매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있음.

○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계속적 거래관계 존재 여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 의존도(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가 상당한지 여부, 시장상황,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예시)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 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 간 거래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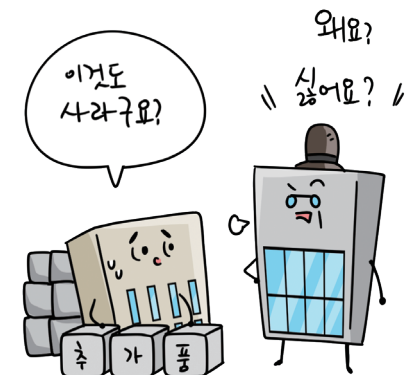
■ 구입강제(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 2]6.가)

1) 구입강제 행위 개념

- 거래상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당해 거래상대방이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제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
-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2) 구입강제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구입강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



■ 이익제공 강요(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 2]6.나)

1) 이익제공 강요 행위 개념

- 거래상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토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
- 판매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인력 파견을 강요하고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등

2) 이익제공 강요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이익제공 강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당해 행위의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이익제공의 내용과 성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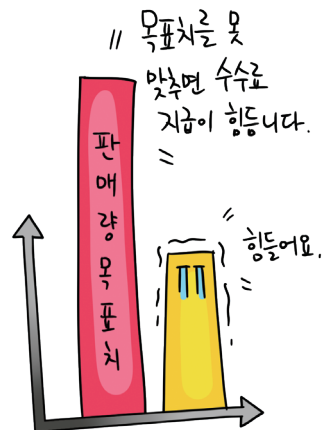
■ 판매목표 강제(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 2]6.다)

1) 판매목표 강제 행위 개념

- 거래상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제품 공급 중단 등을 하는 행위

2) 판매목표 강제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



-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됨

■ 불이익 제공(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 2]6.라)

1) 불이익 제공 행위 개념

- 거래상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포함)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계약 기간 중 부당한 거래 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을 설정하는 행위 등

2) 불이익 제공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설정, 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등
-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 경영간섭(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52조, [별표 2]6.마)

1) 경영간섭 행위 개념

- 거래상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 회사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판매처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 출납 등 사업 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



2) 경영간섭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경영간섭이 부당한지 여부 등
 - ☞ 경영간섭의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경영간섭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거래처에 대하여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 지속적인 거래에 영향을 받을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구입을 요청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내기 하는 경우
- 독과점적 지위의 강화, 판매지역 제한, 밀어내기 등 공정거래법 상 위법·부당한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과 제품 판매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제품·용역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대금 결제의 이행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당좌수표 또는 백지어음을 예치토록 하거나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요구하는 등 이중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 회사의 임직원 선임·해임·변경 등에 대하여 우리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경영지도라는 명목하에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과도한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납품업자가 타 거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

[심결례]

사례
01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임의공급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하고,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 판촉사원의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리하였음에도 대리점과의 사전협의 없이 진열 판촉사원 임금을 50% 이상 전가함.

심결
요지

남양유업은 법률자문·내부검토 등을 통해 대리점에 임의적 주문할당이 위법한 구입 강제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지속하였으며, 진열 판촉사원 투입 및 교체여부를 결정하고 근무시간, 근무관리 및 급여 등 제반사항을 결정·관리하는 등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대리점에 급여를 부담시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함.

시정명령, 과징금 총 123억원, 검찰고발

사례
02

쿠팡은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 판매 등으로 판매가격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음.

심결
요지

쿠팡의 행위는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련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시정명령, 과징금 총 32억 9천만원

사례
03

(주)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자사(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

심결
요지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이 계열 배급사와 자사 영화를 유리하게 차별 취급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됨.

시정명령 검찰고발, 과징금 CJ CGV(32억원), 롯데시네마(23억원)

사례
04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3.20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앱(APP)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중개 서비스에서 가맹 기사를 우선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함.

심결
요지

카카오모빌리티(주)는 일반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 자사 가맹택시 가입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 가맹택시 기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사 가맹택시 기사가 더 많은 호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차방식을 변경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판단함.

시정명령, 과징금 총 271억 2천만원

Q

구입강제 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 상품을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란 어떤 것인가?

A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입증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① 거래상대방의 주문이 없음에도 회사의 재고량 해소를 위해 일방적으로 공급하면서 반품을 불허하는 경우
- ② 거래상대방의 영업과 무관한 제품을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게 하는 경우
- ③ 신제품을 거래상대방의 의사를 불문하고 대량 공급하고 반품을 불허하는 경우
- ④ 거래상대방이 자재의 구입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재를 별도의 운송비까지 지급하면서 구입한 경우

○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 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에 위반됨

■ 배타조건부 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52조, [별표 2]7.가)

1)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개념

- 거래상대방이 당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2) 배타조건부 거래 위법성 판단기준

-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 구입처,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배타조건부 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상대 사업자의 숫자가 많고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을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배타조건부 거래의 의도 및 목적
- 배타조건부 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3) 배타조건부 거래 예외기준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 전문성 등으로 인해 A/S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 거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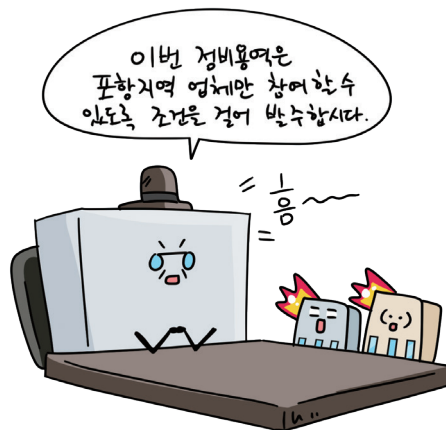
■ 거래지역 상대방 제한(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52조, [별표 2]7.가)

1)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행위 개념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지역제한을 하여도 제재가 없는 등 구속성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제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



※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전속거래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해 경쟁사 제품·용역의 취급을 제한·금지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게 우리 회사의 경쟁자로부터 거래 제의를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항하여 우리 회사 제품·용역의 가격을 경쟁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낮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 판매점 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지역제한 위반시 공급중단,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
-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 유지, 가격차별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게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 제품·용역 거래 시 자기가 운송협력 업체로 지정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는 경우

[심결례]

사례
01

크라운제과는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서 계약서상에 대리점이 관할 영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할 때, 피심인 (크라운제과)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대리점이 관할 영업구역을 이탈 하여 거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심결
요지

크라운제과는 자신의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 대리점의 거래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기준, 일정한 판매지역을 할당하고 해당 판매지역 내의 소매점등과 거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즉, 대리점이 크라운제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해당 판매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 사전에 크라운제과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점이 크라운제과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판매지역 이외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크라운제과와 대리점 간에 체결한 거래약정에 따라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크라운제과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45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됨.

시정명령

사례
02

KT&G 수도권 3개 지사·지점은 관할지역 담배소매상들에게 경쟁사업자 담배를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고, KT&G 서울지역 4개 지사·지점은 2005년 8월 18일 출시한 '로크릭스(LOCRIX)'의 판매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관할구역 내 담배소매상들에게 로크릭스의 동종 담배라 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들의 타르 6mg급 담배를 일정기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었음. 또한, 경쟁사업자의 담배 및 담배광고물을 매장에 진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도 있음.

심결
요지

KT&G는 자기 담배의 가격·품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소매상과 약정을 맺어 이들과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약하는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담배소매상에 대한 자신의 담배 수요를 유지 또는 창출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에 위반됨.

시정명령

6. 대기업집단제도 및 공시

○ 대기업 집단 정책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으로,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의 금지, 금융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계열 회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이 있음

1)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기준

- 대상 : 자산총액이 국내 총 생산액(GDP) 0.5% 이상의 기업집단(법 31조)

2) 상호출자 제한 또는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신고사항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매년 4월말까지 당해 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 소유현황, 국내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3) 기업집단의 범위

- 기업집단 :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이며,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임

4) 기업집단 편입 제외

-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소속회사는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 시 30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함
- 기업집단으로 지정 또는 편입된 후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지분매각, 임원 겸임 해지, 지분요건 미충족 등) 발생시 공정위 신고를 통해 기업집단에서 제외

[심결례]

사례 01	기업집단 '포스코'의 동일인은 2015~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인 (주)포가스템을 소속회사 명단에 누락하였음.
심결 요지	(주)포스코가 지분 99.4%를 보유한 해외계열사 □ □ 가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펀드 △△가 국내 회사인 (주)포가스템에 출자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였음. 상기 해외계열사 및 해외펀드는 포스코의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펀드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내 회사 (주)포가스템은 기업집단 포스코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하였음.

경고 공정위는 기업집단 포스코의 동일인(주)포스코)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 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 누락 계열회사가 1개인 점, 누락행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누락 행위로 인해 법상 기업집단 규제 등을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자진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함.

Q

기업집단이란 무엇이며, 대기업집단은 어떻게 지정되는가?

A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대기업집단은 법률용어는 아니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포괄하여 칭하는 용어임.

Q

기업집단과 계열회사의 차이는?

A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말하고, 계열회사는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한다.

Q

우리 회사가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특정 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임명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기업집단에 편입시켜야 하는가?

A

지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 예를 들면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한다면 기업집단에 편입시켜야 함.

Q

등기임원이 5명인 어떤 회사에 대하여 우리 회사에서 1명의 임원을 임명 하였으나, 임명한 임원이 대표이사일 경우 기업집단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A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우리 회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임원수와 상관 없이 기업집단에 편입시켜야 함.

Q

국내 회사와 외국 회사가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양측의 이사의 수가 동일하고 국내 회사가 대표이사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회사의 기업집단 편입 여부는?

A

외국인이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도 계열회사의 편입요건 중 하나인 양측의 이사의수가 동일하고 동일인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열편입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서 국내 회사의 기업집단에 편입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신고를 해야 함.

○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국내총생산(GDP)의 0.5%이상인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안됨(법 제31조)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국내계열 회사의 주식취득, 소유금지

2)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순환출자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되, 일정기간 이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당해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3) 기존 순환출자를 포함한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

4) 신규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회사는 상호출자를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 부터 1년 내에 해소하여야 함

5) 법 위반시 제재조치

-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
-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 불가 조치
- 위반한 금액의 10% 이내에서의 과징금 부과 및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심결례]

사례
이

에스케이주식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2000년 7월 31일 현재 에스케이에너지판매(주) 주식 71,220,193주(취득가액 기준 : 3,916억원)를 소유하고 있고, 계열회사 에스케이글로벌(주)는 에스케이이주식회사 주식 14,699,169주(취득가액 기준 : 1,749억원)를 소유하고 있음. 에스케이글로벌(주)가 2000년 7월 31일 에스케이에너지판매(주)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에스케이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에스케이에너지판매(주) 주식 71,220,193주를 대신하여 에스케이글로벌(주)로부터 에스케이글로벌(주) 주식 37,205,428주(3,916억원)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상호출자가 발생함.

심결
요지

에스케이주식회사는 2000년 7월 31일 에스케이에너지판매(주)와 에스케이글로벌(주)의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에스케이글로벌(주)와의 상호출자를 해소 시한인 2001년 1월 31일까지 해소하기 위하여 에스케이글로벌(주) 주식을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소시한 이후에도 처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유하여 상호출자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

시정명령 에스케이주식회사는 에스케이글로벌(주)와의 상호출자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함. 과징금 : 11억4,300만원

Q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에 대해서만 금지되는가?

A

공정거래법 제9조의2에 의해 계열회사 간의 직접적인 상호출자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2014. 7. 25 시행)도 금지하고 있음.

Q

A사, B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A사가 B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공동 출자하여 C사를 설립하였다면 상호출자제한 위반여부는?

A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본 사항은 상호출자제한 위반이 아님.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24조)

1) 법 위반시 제재조치

- 관련 채무보증의 해소 등 시정명령
- 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 이내에서의 과징금 부과 및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심결례]

사례 이

현대자동차(주)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의 소속회사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금지 됨. 현대자동차(주)는 1999년 8월 16일 인천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평택항 일반부두 일부를 자동차 전용부두로 개축하여 자동차 전용선 접안시설 설치를 허가 받았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본 시설물을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원상복구 이행보증보험증권(17억4,600만원)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시행을 허가함. 이후 현대자동차(주)가 기아자동차(주)에 자동차 접안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이전 인가를 신청하여 기아자동차(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받음.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주)가 연대보증한 원상복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채무보증제한제도를 위반.

심결 요지

현대자동차(주)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인 2001년 8월 13일 현대자동차(주)가 서울보증보험(주)의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계열 회사인 기아자동차(주)에 대하여 행한 연대보증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의 금지에 해당되고 본 채무보증이 법상 허용되는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사항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임

과징금 1억7,500만원

Q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도 규제대상에 해당되는가?

A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에 의한 채무보증 금지규정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나 해외계열회사로부터의 채무보증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

금융·보험사의 여신과 관련하여 계열회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채무보증에 해당되는가?

A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에 의한 채무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된 인적 보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계열회사를 위한 담보제공(물적 보증)은 법상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

금융·보험사의 여신과 관계되지 않는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도 금지되는가?

A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에 의한 채무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된 보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금융·보험사의 여신과 관련되지 않은 보증(외상매입관련 보증 등)은 법상 규제대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해외금융·보험사의 여신과 관련된 채무보증도 법상 규제대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 내부거래 공시(법 26조)

1) 적용대상 회사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상장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포함
 - *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함
- 연도중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신규 계열편입된 날부터 적용됨

2) 적용대상 거래

- 내부거래 금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이상에 해당할 경우(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 자금거래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자산거래 :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유가증권 거래 :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공시시기 및 절차

- 공시시기

-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는 이사회 의결 후 3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함(단, 비상장법인은 7영업일 이내 공시)
- ② 공시 기한의 말일이 비영업일(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다음의 최초 영업일 까지 공시해야 함(공시 기한 산정 시 위 비영업일은 제외하며, 회사가 임의로 정한 휴일은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함)

- 공시절차

- ①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전산망을 통하여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4)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기본금액

위반유형				과태료금액 (단위:만원)
이사회 의결여부	공시여부	공시기한 준수여부	누락 또는 허위공시 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5,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 까지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2,000
			※단, 경미한 위반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에 해당하고 10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한 경우	면제 가능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5,000
			※단, 경미한 위반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에 해당하고 10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한 경우	면제 가능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	7,000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0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7,000
		※단, 경미한 위반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에 해당하고 10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한 경우		면제 가능

-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

거래금액	적용비율(%)
100억원 이상	100
8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90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80
4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70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60
20억원 미만	50

- 임의적 조정금액

①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의 가중 또는 감면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임의적 가중금액은 기본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면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면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감면비율의 합계

② 가중 조정사유 및 비율

-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 사업자별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 가중

③ 감면 및 면제 조정사유

- (과태료 면제) 다음의 위반사항을 10영업일 이내에 자진하여 시정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함
 -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또는 개별회사가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 공시내용의 오기, 누락, 계산 오류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거래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
- 계열 금융 투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열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0%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 투자 사업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적고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적은 경우 50%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 위 면제 사유(신규지정 편입 30일 이내)에 해당하나 자진 시정한(10영업일)이 지난 후 시정한 경우
 -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심결례]

사례
01

포스코계열회사 △△는 포스코건설로부터 2억1천5백만원을 차입받기로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2012. 12. 21)하였으나, 이에 대한 공시를 지연한(2013. 3. 29) 사실이 있음

심결
요지

대규모내부거래사항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상장사는 1일 이내, 비상장사는 7일 이내 DART시스템에 공시해야 함

과태료 350만원

사례
02

포스코계열회사 △△은 포스코로부터의 부동산 매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면서, 거래일자를 누락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심결
요지

공시일 당시, 해당 부동산의 매매일자가 이사회 의결일과 공시일 사이로 계약서상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매매 일자는 공시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잘못 기재하였음. 이는 주요 공시사항에 대한 누락으로 인정

과태료 1,800만원

사례
03

포스코계열회사 ○○은 2001년 7월 포스코로부터 436억원에 부동산을 임차하는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도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였음.

심결
요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일정한 거래규모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

과태료 7,000만원

Q

양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 두 회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지?

A

거래규모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있음. 만일 거래규모가 일방당사자에게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거래당사자에게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Q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회사가 편입일 이전에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부과되는지?

A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는 기업집단 편입일로부터 발생하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없음.

Q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가 100억원 이상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A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가 아니므로 출자금액이 100억원 이상(또는 자본금의 5% 이상)이더라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Q

당사는 포스코의 상법상 자회사입니다. 당사와 포스코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A

과거에는 동일인이 법인인 기업집단에 대해 상품·용역거래 공시 의무를 면제하였으나, 현재는 동일인의 형태와 관계없이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100억 원 이상 등)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함.

Q

부동산 매매계약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한 이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에도 별도 공시하여야 하는가?

A

중도금과 잔금 지급은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별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없음.

Q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국외 계열회사와 대규모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지?

A

과거에는 국외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해 공시 의무를 유예하였으나, 현재는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함. 따라서 거래 규모가 100억 원 이상(또는 자본금의 5% 이상)인 경우 사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완료해야 함.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법 27조)

1) 적용대상 회사

-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국내)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이하 '비상장회사'라 함)
-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비상장회사에게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2) 주요 공시사항

-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
 - ①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 그 변동사항
 - * 예외) 1%미만의 변동이라고 하더라도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액이나 비율과 상관없이 공시 대상임.
 - ②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
 - ③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의 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 사항
- 자산, 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 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
 - 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 ②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 제외)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 ③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 ④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사항
 - ⑤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 결정 사항

- ⑥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사항
- ⑦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결정사항

- 영업양도, 양수, 합병, 분할, 주식 교환, 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다음의 사항
 - ① 상법 제374조 제522조 제527조의 2 제527조의 3 또는
 - ② 제530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사항
 -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에 관한 결정사항
 - ④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
 -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 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사항
 - 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 중단 또는 해제 결정사항
 - ⑦ 사업연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및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그 거래내역

3) 공시시기

- 공시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 단, 임원변동현황 공시는 분기 공시 (등기일 속한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① 7영업일 이내에는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함
 - ② 기간 계산은 사유발생일부터 하되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함
- 사유발생일 기준
 - ① 소유지배구조 관련 '변동이 있을 때'란
 - 주식을 교부받은 날,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 권리가 이전되는 날
 -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날(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
 -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그 외의 경우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이 확정되는 날
 - ②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

- ③ 재무구조 관련 '결정이 있을 때'란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

4) 공시방법 및 절차

- 중요사항 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공시양식은 금융감독원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 준용. 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름

※ TIP!

- 과태료 면제 규정 추가
 - : 신규 지정/편입 후 30일 이내 위반 또는 경미한 위반을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가 면제됨

[심결례]

사례
01

포스코계열회사 □□는 2006년 4월 18일 해외 자회사인 IBC 등 3개사가 한국 수출입은행 등 5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39억원 (자기 자본 9,298억원의 10.1% 해당)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나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06년 4월 25일까지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5월 4일 공시함으로써 공시 9일을 지연.

심결
요지

포스코계열회사 □□는 시행령 제17의10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 규정에 따른 공시대상회사로서 채무보증 결정사항을 지연공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3을 위반

조치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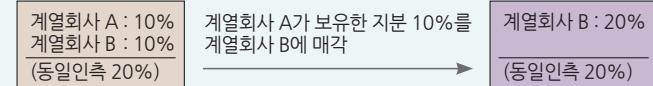
사례
02

포스코계열회사 △△은 포스코로부터의 부동산 매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면서, 거래일자를 누락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과태료 1,200만원

최대주주의 총 지분율은 변동이 없으나 최대주주 간에 아래와 같이 지분이동이 있을 경우 공시의무가 있는지?

Q



A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총 지분율은 변동이 없으나, 최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이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으므로 동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 최대주주 전체의 지분을 합계에 변동이 없을지라도 최대주주 구성원이 변동되거나, 최대주주 구성원 간 지분율이 1% 이상 변동 시에도 공시대상임

Q

임원 중임은 공시사항이 아닌데, 중임(연임)과 신규선임의 기준은 무엇인지?

A

A라는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고 같은 날 같은 직위로 선임된 경우를 중임이라 하여 공시대상이 아니지만, 해임일과 선임일이 다르거나, 직위가 변경된 경우는 신규 선임으로 보아 공시대상임.

Q

임원변동의 공시양식을 보면 변경 전 란에 '해임일(등기일)'과 변경 후 란에 '선임일(등기일)'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변동이 없는 임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A

변동이 없는 임원의 경우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똑같이 임원명을 기재하고 변경 후 란의 선임일과 등기일을 기재하면 됨.

Q

비상장회사의 등기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였을 경우 공시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A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등 신분 변동은 더 이상 공시사항이 아님. 다만, 해당 임원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 매도로 인해 최대주주 일가의 합산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었다면,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변동'으로 공시하여야 함.

Q

비상장사인 A사가 자사 사육을 계열회사이면서 비상장사인 건설회사 B에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누가 무엇을 공시하여야 하는지?

A

A사는 동 공사계획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공시(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를 하여야 하며, B사는 비상장사 공시의무는 없으나, 최초로 도래하는 기업집단현황 연공시 때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현황'에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함

* 취득 중인 자산(건설 중인 자산, 투자자산 등)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며 이에 대한 결정사항도 공시대상임

Q

공시사항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규정에서 7일간의 기간에 비영업일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는가?

A

7일간의 기간에 비영업일이 있을 경우 이는 7일에 포함. 단, 7일째 되는 날 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면 됨.

Q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변동사항이라 할 때 최대주주란?

A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를 포함하는 개념임.

Q

연도 중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편입된 회사의 공시의무 발생일은?

A

신규로 편입된 회사는 신규 계열편입된 날부터 공시의무가 발생함. 단, 편입 후 30일 이내에 발생한 위반 사항을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할 경우 과태료가 전액 면제됨

Q

유형자산이 최초 취득시에는 자산총액의 10%에 미달되어 공시대상이 아니었으나 자본적 지출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가치가 공시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공시대상인지?

A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비유동자산의 취득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가 공시사유의 발생일임. 이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므로 비유동자산의 취득이 아니므로 공시대상이 아님.

7. 공정거래법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	△	x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행위의 유형을 10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2조 별표2에서는 9가지 유형으로 행위를 열거하고 있음.

* 거래거절, 차별적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 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1.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 내용을 현저한 제한하는 행위				
• 공급사에 대하여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쟁사와 공동으로 구입을 거절하지는 않는가?				
• 일반 사양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 사용조건, 사양 등을 명기하여 특정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타 업체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고 특정사업자와 거래하지는 않는가?				
•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비계열 회사를 배제하지는 않는가?				
2. 차별적 취급 - 거래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에 따라 부당하게나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대량구매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가격을 차별 하지는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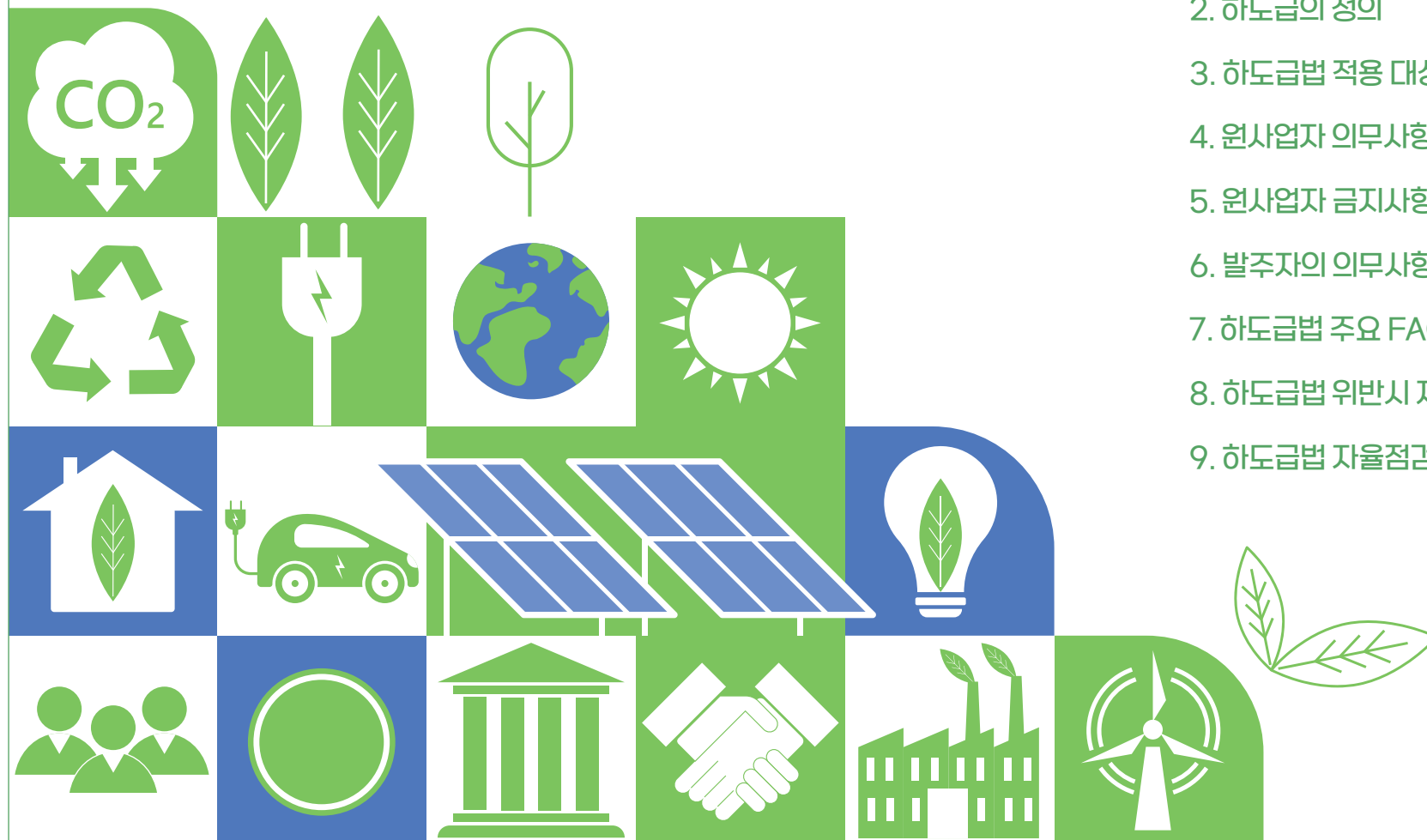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	△	x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에게만 지불조건을 현저히 엄격하게 하거나 우대하지는 않는가?			
	• 물품 구매 또는 공사 발주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대해 구입단가, 선금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지는 않는가?			
	• 사규, 공문, 계약 등을 통해 계열회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지는 않는가?			
	• 계열사에 대해 수량, 가격,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유리한 취급을 하는가?			
	• 계열회사와 거래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구입함으로써 계열회사의 경쟁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아닌가?			
3. 거래상 지위남용 -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보다 우월한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 상대방의 기술, 노하우 등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상품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지 않는가?			
	• 계약서 등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사업자의 관계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지는 않는가?			
	•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지는 않는가?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	△	x
	• 선 시공하게 한 후 기성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하게 하지는 않는가?			
	• 사업자 귀책으로 공기, 납기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보전해주지 않고, 공사기간 또는 납기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난 추가로 징구하지는 않는가?			
	• [불이익제공] 상대방과 협의 없이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하지는 않는가?			
	• [불이익제공]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가?			
	• [불이익제공]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기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가?			
	• [불이익제공]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 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가?			
	• [불이익제공]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가?			
	• [불이익제공]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지급 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지는 않는가?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	△	x
	• [불이익제공]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종결 후에도 예정가격이나 원가계산상의 오류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거나 이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하지는 않는가?			
	• [경영간섭]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지는 않는가?			
	• [경영간섭] 자기가 거래상대방 직원의 부적격성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경영간섭] 협력업체가 하도급업체가 타 거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는 없는가?			
	• [거래강제]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공급사에게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는가? * 계열사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회사에 한하여 거래하는 행위, 회사 납품업체에게 계열회사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05

하도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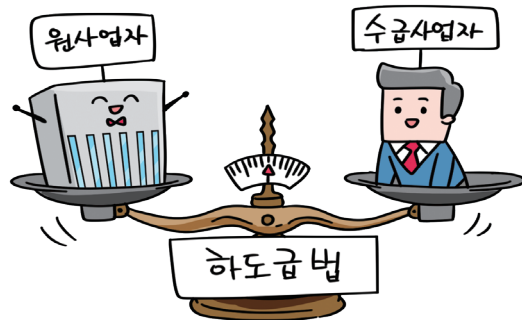


1. 하도급법 목적
2. 하도급의 정의
3. 하도급법 적용 대상자 및 기간
4. 원사업자 의무사항
5. 원사업자 금지사항
6. 발주자의 의무사항
7. 하도급법 주요 FAQ
8. 하도급법 위반시 제재 유형
9. 하도급법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1. 하도급법 목적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



2. 하도급의 정의

1) 민법상 하도급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거래형태(민법 제664조 참조)
- 하도급이란 도급계약에 따른 재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다시 그 도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급인(하수급인)에게 다시 도급하는 거래 형태를 의미함

2)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3. 하도급법 적용 대상자 및 기간

1) 법 적용 대상요건

- 대기업(원사업자) ↔ 중소기업(수급사업자)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하도급법상 대기업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포스코 그룹 계열회사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적용 제외)
- 대기업(원사업자) ↔ 중견기업(수급사업자)
 - ☞ 위탁받은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 중견기업(원사업자) ↔ 중견기업(수급사업자)
 - ☞ 연간 매출액 2조 원 이상의 중견기업이 연간매출액 800억원 미만~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위탁한 경우 적용
- 중소기업(원사업자) ↔ 중소기업(수급사업자)
 - ☞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보다 원사업자의 직전년도 매출액(건설위탁의 경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많은 경우 적용

※ 중소기업 정의

- 제조·서비스업종별
 - 자산 5천억 원 미만 & 3개년 평균 연간매출액 4백억 원 이하~1천5백억 원 이하
- 건설업
 - 자산 5천억 원 미만 & 3개년 평균 연간매출액 1천억 원 이하

※ 중견기업 정의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로 보호되는 경우

- 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이하 '대기업')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 ②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 적용제외대상 중소기업(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연간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 중소기업은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

위탁 유형	연간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용역위탁	10억 원 미만
제조·수리위탁	30억 원 미만
건설위탁	45억 원 미만

2) 적용대상 거래

■ 제조하도급('제조위탁':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① 물품의 제조 ② 물품의 판매 ③ 물품의 수리 ④ 건설

☞ 그 業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

-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業으로 하는 경우 하도급 목적물(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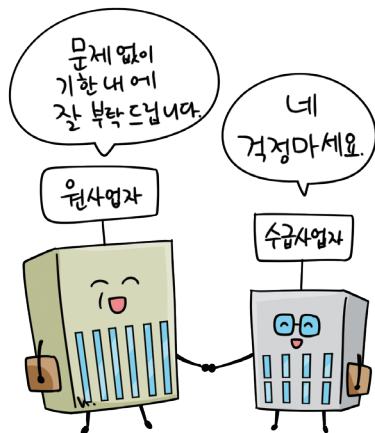
- ① 제조·수리·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거래 포함).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해당 안 됨
 - ②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 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함
 - ③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모형 등
 - ④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
 - ⑤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등 (임)가공
- ☞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간주

- 사업자가 건설을 業으로 하는 경우 하도급 목적물(예시)

- ①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가드레일, 표지판 등 시설물을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위탁

- ②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등의 첨부 없이 규격, 품질 등을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제조위탁하는 것
- ③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제조위탁
- ④ 규격·표준화된 자재라도 특별히 사양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됨



■ 수리하도급(‘수리위탁’: 하도급법 제2조 제8항)

- 주문에 의해 물품을 수리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예시】

- ① 차량 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② 선박 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건설하도급(‘건설위탁’: 하도급법 제2조 제9항)

- 건설업자가 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①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②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③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 용역하도급(‘용역위탁’: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로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용역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함

- ①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정보프로그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나 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조합된 것

-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 음성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
-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
(예) 디자인, 상표, 설계도면 등)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과 관련된 성과물

② 역무 공급위탁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설계 제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 하는 활동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활동
-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 장소, 경비 등의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 발주자의 정의(하도급법 제2조 제10항)

-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단,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함

3) 법 적용대상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단,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 할 수 있음.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조정 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함(하도급법 제23조)

※ 거래종료일

- 제조·수리 및 지식·정보성과물의 제작위탁: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건설위탁: 공사가 완공된 날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 해지 또는 중지된 날

Q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일괄 재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법 적용여부는?

A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하도급법상 적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일괄 재하도급이더라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음.

Q

제조업을 하는 대기업이 공장 증축을 위해 중소건설업자와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는지?

A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자격 있는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당해 위탁은 도급계약일 뿐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은 아님.

Q

제철소 조업 및 정비작업 수행 외주파트너사 중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여부는?

A

외주파트너사 중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포장, 가공업체 등은 수급사업자에 해당되나, 청소 등 단순노무 및 운송 등은 제외됨.

4. 원사업자 의무사항

○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1) 서면의 발급(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중요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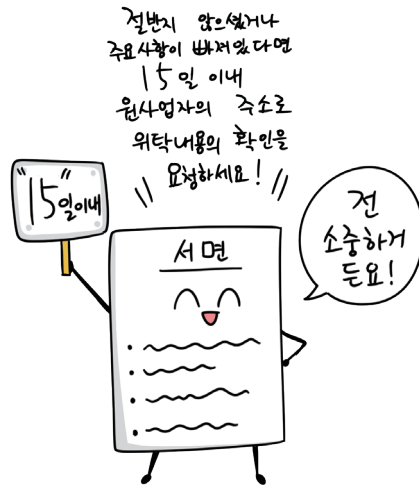
- 중요 기재사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 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목적물)의 내용
- ②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③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 ④ 하도급대금(선금금, 기성금, 조정금액 등)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⑥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서면의 발급시기 : 사전 발급

- ①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 등을 위한 작업 시작하기 전
- ②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③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④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 예외적으로 일부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발급 가능(하도급법 제3조 제6항)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발급이 가능하나,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확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시하여야 함

☞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며, 해당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함(하도급법 제3조 제7항)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하여 기재하는 경우
- 제조·수리·건설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 전산으로 발주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 발주처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 다툼으로 변경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미발급하는 경우(서면 미발급에 해당)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기본계약서(개별계약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주문서, 발주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는 경우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VAN 또는 전산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수출용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한 경우
- 서면 발급을 공정위 표준하도급 계약서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하도급 계약 추정제(하도급법 제3조 제8항, 제9항)

원사업자가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일정한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일정한 사항: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통지와 회신은 내용증명우편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 제외) 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함

-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의 성립을 서면으로 확인, 향후 분쟁에 대비 가능
- 부인하는 경우 : 계약의 불성립을 확인하고 작업중단, 하도급업체의 손해예방
- 회신이 없는 경우 : 계약 성립 추정, 추후 분쟁 시 소송 등을 통한 구제 가능



3) 서류의 보존(하도급법 제3조 제12항)

- 보존 서류(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 ① 하도급계약서
- ② 제조 등 위탁 목적물의 물품수령증명서
- ③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 ④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등이 기록된 서류(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
- ⑤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록된 서류
- 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등이 기록된 서류
- ⑦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기록한 서류
- ⑧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을 기록한 서류
- ⑨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
- ⑩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⑪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⑫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 해당)

- 보존기간(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 단,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류는 7년간 보존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도급대금 지불 전의 관계서류(검수관계, 반품 관계, 하도급대금의 결정 등)를 파기하는 경우
- 계약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원본을 파기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양이 방대하여 보존이 어려워 마이크로필름, 컴퓨터디스켓 등의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

[심결례]

사례 01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8,45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고, 계약 서면 38,451건 가운데 전자서명을 완료하기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6,646건, 공사 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늦게 발급한 건을 없애고 다시 계약을 맺은 경우가 1,121건이었음.

심결 요지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적고 당사자 간의 서명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일은 전자서명 완료일이 되어야 하나, 삼성중공업은 계약 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했음

시정명령, 과징금 36억원 및 법인 고발

사례 02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6,681건의 선박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함. 계약발급일보다 최초 작업 실적 발생 월이 빠른 계약이 9,427건이었음.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음.

심결 요지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는 관행적인 '선 시공 후 계약'행위는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

시정명령, 과징금 153억원

사례 03	(주)삼태사는 2019년 6월말 ~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미발급함.
심결 요지	공정위는 (주)삼태사가 아파트 및 상가분양 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시정명령	

○ 선급금 지급 의무

1) 선급금 지급이란?

발주자가 위탁하면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의 착수를 쉽게 하기 위해 원재료를 구매하거나 노무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러한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2) 선급금의 지급(하도급법 제6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



3) 적용기준

- 선급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액 산정기준
 - ①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② 다만,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내역(용도, 지급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용도와 각 항목별 비율을 지정받아 선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 : 그 용도와 항목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예) 토목건축공사에 토공사, 철콘공사, 조경공사가 있을 경우,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토공사부분에 30%, 철콘공사부분에 20%를 선급금으로 지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원사업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하도급계약 금액의 30%, 2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면 됨
 - 용도를 지정받지 않고 전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관련된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 (예) 발주자가 용도 지정 없이 계약금액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관련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각각 하도급계약금액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지연 제출하여 원사업자가 선급금의 법정지급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은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4)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지급 기준

- 공정위 고시 : 지연이율 연 15.5%(2015. 7. 1~)
- 어음할인율 연 7.5%(2012. 8. 21~)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경우
-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지급한 경우
-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선급금을 공종별, 품목별로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받았는데 하도급내용은 공종이나 품목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
- 선급금 지급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결례]

사례 01	상원종합건설(주)는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을 94일 초과 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선급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비율 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하는 한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심결 요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선급금 지연지급 행위, 선급금 지급비율 미유지 행위,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

시정명령

사례 02	(주)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1월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열교환기 제관 제작'을, 2013년 7월 '유지씨씨(ugcc) 에틸렌 저장용기 제관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 지급해야할 선급금 3억 1,150만원을 '선급금 없음'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유로 법정 지급기일인 15일 내에 지급하지 않음
심결 요지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대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함.

교육이수 명령, 지연이자 2,463만원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의무

1) 내국신용장 개설(하도급법 제7조)

-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함
-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물품수령증명서(인수증)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하도급법 제8조 제2항)

2) 적용기준

-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원사업자 입증책임)
 - ① 수급사업자가 영세하거나 내국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작성능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②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처리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
 - ③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한 상태에서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등

3) 하도급법상 내국신용장 개설과 관세 환급에 대한 흐름도

구 분		하도급법 규정	적용범위
내국신용장 개설	발주서(제조위탁)	1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	하도급법 제7조
	매도확약서 제출(Offer Sheet)		
	내국신용장 개설(Local L/C)		
	물품수령	즉시 (통상 10일 이내 인수증 교부)	하도급법 제8조
	인수증 교부		
관세환급	기초원자재 납세증명서 제출	60일 이내 관세액 지급	하도급법 제15조
	완제품 수출		
	수출자의 관세 환급	15일 이내 관세액 지급	하도급법 제15조
	하도급업체에 관세 지급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1)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하도급법 제9조)

- 수급사업자가 납품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며 공정·타당하여야 함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다만, 용역 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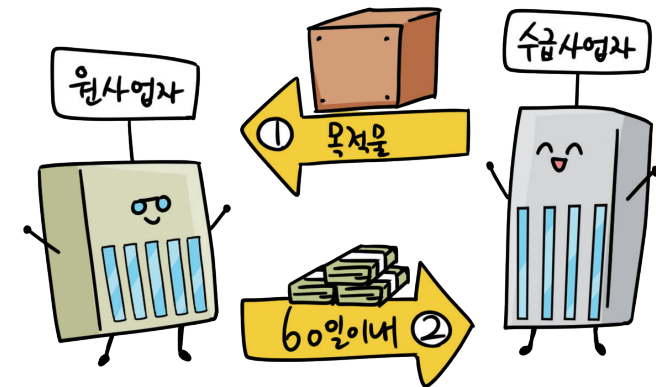
2) 적용기준

- 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제3의 공인기관 등에서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
-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 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 검사결과 통지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않음
 - ②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음

3) 대량 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 제조업에서 대량 납품의 경우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납품완료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단,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됨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1)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지급비율 등(하도급법 제13조)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 * 목적물 수령일 :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간주(하도급법 제13조 제2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함(하도급법 제13조 제10항)

2) 적용기준

-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 ①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②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기간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임
 -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 ④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⑤ 하도급대금 지급 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 기준
 - 제조·수리위탁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이며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

-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 건설위탁 : 인수일(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
 -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
- 현금 결제비율 유지 적용기준
 - ① 현금비율의 산정방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수령액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하도급대금지급액
 -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④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 현금으로 인정되는 결제수단 : 현금, 수표
 - 어음만기일 유지 적용기준
 -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안 됨
 - ☞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의 어음을 교부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간주
 -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현금결제비용 및 어음만기일 유지(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제5항)의 적용대상

① 1999년 4월 1일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적용

* 하도급계약 체결시점 판단기준

- 제조위탁의 경우 기본계약이 아니라 발주서 등에 의한 개별계약 체결시점
- 건설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계약이 아니라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점

② 재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재하도급 관계에서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은 수급사업자(재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는 2차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결제비용 및 어음만기일 유지기준의 적용을 받음

③ 선급금 지급에서도 현금결제비용 및 어음만기일 유지기준의 적용을 받음

-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계산방법

① 어음할인율은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급법 제13조 제9항)「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고시 어음할인율: 연 7.5% (2015. 10. 23~)
-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액수 × 할인율 × 지연일수/365일

② 지연이자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 고시 지연이율: 연 15.5% (2015. 7. 1~)
- 지연이자 = 지연지급 하도급대금 × 지연이율 × 지연일수/365일

- 유의사항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목적물의 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에 대한 입증자료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 목적물의 납품과 동시에 대금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원사업자가 월 1·2회 납품을 받고도 마감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 달 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잡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대법원 판례」(94누10320 등)

-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음
- 즉 원사업자가 정산할 것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하도급대금은 공사가 완료되어 목적물이 인수되면 지급하도록 하고, 그 밖의 채권채무관계는 별도의 해결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판결임

[심결례]

사례
01

포스코ICT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국씨씨에스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브라질 CSP 제철소 관련 전자기기, 배전반 등을 제조위탁하고, 2014년 6월 25일부터 2015년 11월 14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53,918천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또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휴먼에어텍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건설·용역 위탁을 한 후, 2013년 9월 30일부터 2015년 5월 28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1,907,669천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8,61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심결
요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포스코ICT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됨.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도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됨.

시정명령, 과징금

사례
02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는 2016. 1. ~ 2019.3. 기간 중 46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 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결제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1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5,431천원을 지급하지 않음.

심결
요지

에이치디씨산업개발㈜는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함.

시정명령, 과징금 3,000만원

Q

하도급법상 기간계산 원칙, 기산일 결정,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계산 기준은?

A

「기간계산 원칙」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시작일을 기간에서 산입하지 않고 해당 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

「기산일의 결정」 원사업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임

「계산 예시」 목적물 인수일이 2010년 3월 14일인 경우, 시작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2010년 3월 15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2010년 5월 13일, 기산일은 2010년 5월 14일이며, 이 날부터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가 적용됨.

Q

용역위탁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의 판단기준은?

A

용역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Q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에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일수 30일만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A

당사자 간 약정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경우에는 하도급상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단, 당사자 간의 약정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하도급법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인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임.

Q

현금성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여부?

A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였더라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Q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예외조항으로 '대등한 지위에서의 약정'과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이 인정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A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라 함은 회사의 외형규모인 자본금, 종업원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상호 대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업종의 특성에 따른 시장점유 정도, 생산능력 및 기술수준, 제품 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함

'당해업종의 특수성'이란 당시의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당해업종의 상관행 및 경제현상의 비정상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금지급 기일을 지킬 수 없을 경우라 하겠음. 상기 예외 규정의 적용은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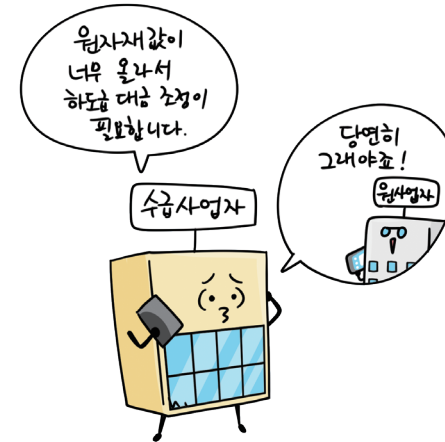
Q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청구서에 근거하여 지급시, 수급사업자로부터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아 대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하도급법상 지급지연 인지?

A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은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수급사업자가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1)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의 2)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적용 안 됨(하도급법 제16조의2 제2항)
-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6조의2 제3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정의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해당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하도급법 제16조의2 제4항)

- 제4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6조의2 제5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이나 중기회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기회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됨(하도급법 제16조 의2 제10항)
- 수급사업자, 조합이나 중기회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거나,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조합 또는 중기회의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16 조의2 제11항)

☞ 기존 신청권만 가지고 있었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협의 결렬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

☞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 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2) 적용기준

- 수급사업자는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가능
-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목적물 등의 물량 변경 등 계약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및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하지 않거나 공급원가 및 공급원가 외의 비용의 하락 비율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조정신청 가능(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 조합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

- ①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
 - ②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 ③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7%로 함
 - ④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 ⑤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
 - 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 ②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
 - ③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
 - ④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

☞ 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법정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조정신청이 가능한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에 한정됨(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정 신청권이 없음)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 개시 통보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 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잔여 납품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하였다면 그 결과 수급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

※ 분쟁조정협의회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합의지연 시 영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 등 중대한 경영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Q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발주처로부터 원도급금액에 대한 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꼭 응해야만 하는 것이지?

A

철근, 시멘트 등 건설자재 가격 및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는 것이며,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위법임 다만,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사유가 공급원가의 변동이 아닌 저가수주 등으로 인한 적자보전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협의 신청 내용 검토 결과 협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협의를 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의무

1)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하도급법 제13조의 3)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① 지급수단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 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시해야 함

현금결제비율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 1일 이하의 어음 대체 결제 수단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
현금성결제비율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 160일 이하의 어음 대체결제수단 만기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

②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3에서 정한대로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

*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 등이 잦아 월 1회의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날을 의미(하도급법 제13조)

지급기간에 따른 구간별 지급금액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③ 분쟁조정기구

-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시간 등을 공시하여야 함
다만, 입법취지 및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고려하여 분쟁조정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 이를 분쟁조정기구로는 인정하지 않음.

④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기준에서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제 1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태료 기본금액에 대한 가중·감경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과태료금액은 시행령 개정안 기본금액에 과태료기준에서 정한 가중·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결정

⑤ 공시 및 절차

- 공시빈도 및 시기 : 매년 2회 반기말(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 공시
- 공시절차 및 양식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

○ 하도급대금 연동제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물품 등의 제조 건설 등을 위탁할 때 하도급 대금연동에 관한 사항 (연동의 대상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원재료, 조 정요건, 기준지표 및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비 교시점, 조 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 대금반영일등)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시행일: '23.10.04)



1) 적용대상 :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

- ① 원사업자 :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거나,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 사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한 자
- ② 제조 등의 위탁 : 제조, 수리, 건설, 용역 관련 원사업자가 자기 업에 따른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건설공사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경우는 하도급 거래가 아님

- ③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2) 주요원재료의 정의: 하도급대금에서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 ① 물품 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 ② 노무비와 경비는 제외됨

3) 연동제 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

- ①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하도급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③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1회 발주당 납품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 금액
-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단, 그 취지와 사유를 미연동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4)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 ①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및 연동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 ②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또는 갱신 시 표준 연동계약을 체결할 필요

5) 법 위반 시 제재

-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발급한 경우

- 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시정조치, 공표 및 벌점 부과

*3년간 누산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 하도급대금연동제와 조정협의 제도 비교

구분	연동제	조정협의제도
대상	주요 원재료의 비용	공급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점	사전(계약체결 시)	사후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강제성	의무	자율 (다만,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시 원사업자가 협의에 응할 의무 존재)
제재	서면 미기재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1천만원)	조정협의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 등

Q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A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를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Q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제 적용이 가능한지?

A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위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위 위탁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연동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

인건비도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지?

A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 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납품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원재료는 재료비, 인건비는 노무비에 각 해당됩니다.

Q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위탁기업으로서 연동제 적용 가능한지?

A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아닙니다.

*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단,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Q

환율도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A

환율은 원재료의 가격이 아니므로 연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Q

물품을 납품할 때 소요되는 운반비도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A

일반적으로 운반비는 경비의 성격으로서 원재료의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연동제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Q

화물운송용역 위탁 시 운송업체의 유류비도 원재료인지?

A

유류비는 일반적으로 경비에 해당하므로 원재료의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원사업자 금지사항

○ 부당한 특약의 금지

1) 부당한 특약의 금지(하도급법 3조의 4)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할 수 없음



2)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 ①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②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③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④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

3)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 유형(부당특약 고시)

-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①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8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②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③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②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①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 ②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 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① 법 제9조의 제2항의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②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 ③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①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 ②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 ③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 등”이라 한다)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⑤ 계약해제 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 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할 수 없음(하도급법 제4조 제1항)

- ☞ 하도급 3배 배상제 :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공정 위 처분에 더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 책임(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예시(하도급법 제4조 제2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1)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 공사비 항목2)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1)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
 - ① 수급사업자가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함.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전력비, 수도광열비 등)과 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정경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는 제외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적용 기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부당성) 및 객관적(가격) 요건을 갖춰야 함. 두 요건은 상호보완적으로 부당성이 큰 경우에는 가격기준을 낮추어서, 부당성이 적은 경우에는 가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게 됨
- 주관적 요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 ①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 ② 원사업자가 기망을 통해 수급사업자 가격결정에 관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 등
- 객관적 요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 ① '통상 지급되는 대가'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
 - ② '낮은 가격'이란 시장 평균가격과의 괴리정도, 원재료 등의 가격동향, 당해 하도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취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단가결정 방법의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자재(원부자재 포함)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실행예산 범위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건설 등을 위탁한 후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 또는 부대입찰의 경우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 금액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 직접공사비 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심결례]

사례 01	포철산기는 2008년 1월 24일부터 같은해 10월 22일까지 11건의 공사를 6개의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금액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심결 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도급내역 상의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되므로 직접공사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인 하도급계약은 위법하다고 판단
과징금	
사례 02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경 선체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난 해보다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인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음
심결 요지	선체 도장 작업이 이루어지는 도크 또는 선종별로 작업의 난이도가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고, 생산부서는 비물량성 공사일 때, 능률 등을 반영하여 실제 투입 공수보다 낮게 수정 추가 공수를 산정했음. 이는 원인 부서 · 예산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합리적 · 객관적인 근거없이 추가로 삭감된 것임
시정명령, 과징금 36억원 및 법인 고발	

사례 03	포스코ICT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광양 5고로 DCS H/W 1식'등 11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전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가계약 건의 예산에 해당하는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소싱그룹의 평균 낙찰율, 예비투찰자들의 견적가격, 최근 구입가 등 여러 가격을 조사하여 그 중에 가장 낮은 금액으로 조사금액을 선정할 후 조사금액과 같거나 조사금액보다 0.9%~4.4%더 낮은 금액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함. 또한 전자상거래이용약관 및 입찰유의서 등을 통해 최초 설정한 기준가격이 재입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공지하지 아니함. 포스코ICT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 입찰가가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 유찰시키고, 재입찰 과정에서 기준가격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 후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몇차례의 유찰에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입찰가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입찰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초 입찰가보다 5,000천원~416,250천원 낮게 계약금액을 결정함
심결 요지	포스코ICT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자신이 책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입찰가를 제출하는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시키고, 기준가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등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낙찰자 등을 선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입찰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였음
시정명령, 과징금	
사례 04	(주)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 관련하여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하여 총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였음
심결 요지	조선경기 약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등의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세진 중공업의 대금결정은 부당하기에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인정함
시정명령, 과징금 897백만원을 부과	

Q

정부발주 공사시 저가 하도급 심사의 대상이 되면 하도급법상 문제가 되는가?

A

하도급법의 규정은 수의계약 시에는 직접공사비 이하, 경쟁입찰 시에는 최저가 투찰금액에 대한 추가 인하협상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도급에 대비하여 하도급대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즉,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하도급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서 '통상적 지급되는 대가' 이하인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하여야 함.

Q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당초보다 낮게 계약한 경우에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되는가?

A

합리적인 원가절감요인을 제시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할당된 원가절감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여질 수 있음. 통상 장기적인 제조 납품의 경우 거래초년도보다 이후에 원가절감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Q

경쟁입찰 시 하도급대금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A

최저가 금액이 실행예산보다 초과함을 이유로 네고를 통해 최저가 금액보다 낮게 체결하면 법 위반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찰 후 재입찰을 실시함이 타당함.

Q

물량을 5배 이상 많이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도 무관한지 여부는?

A

하도급단가는 그 물량의 대·소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물량이 5배 되는 타사업자의 단가기준으로 계약변경 강요시 범위반 소지가 있음.

Q

하도급입찰견적조건 및 현장설명 시 사전에 도면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계약 견적을 위한 내역을 전혀 확정하지 않고 이를 감안하여 입찰에 응하고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여부는?

A

① 원사업자는 위탁내용의 핵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시 최소한의 내역서나 도면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하도급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견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상관행임 ② 따라서 현장설명 시 불확정한 상황을 미리 설정하고 그 비용을 현장설명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케 하면, 이는 수량과 금액을 사전에 전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도급위탁으로 위법 소지가 있음 ③ 다만, 핵심, 중요한 사항이 아닌 도면이나 내역서상에 반영하기 어려운 미미한 위탁사항을 현장설명 시 견적서에 이를 반영하도록 충분히 설명하였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입찰에 임하였거나, 도면이나 내역서상 문제는 없으나 수급사업자가 단가산출 착오라면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임

○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1) 감액금지(하도급법 제11조)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 당초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적법함

☞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당감액의 경우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함(하도급법 제1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의2)

* 공정위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표준서식 보급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하도급법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2)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감액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 ①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회사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②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해 합의한 경우, 당해 합의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감액하는 행위
 - ③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지급기일 전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⑤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회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회사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절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
- ⑥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⑦ 회사의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⑧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 하도급계약 후 추가 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원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계속적인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경우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감액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달리 감액하는 경우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발주서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대, 장비임차료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최종 정산에 합의하여 감액하는 경우

[심결례]

사례 01

삼성전자는 2003년 4월 휴대폰 단종,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6개의 수급사업자로부터 기납품 받은 납품물량을 폐기처리 하였음. 그 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중 폐기 처리된 물량에 대한 대금을 공제하고 지급

심결
요지

휴대폰 단종, 설계변경 등의 사유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폐기 처리된 물량에 대한 대금을 공제한 행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로 판단

과징금

사례 02

(주)포스코컴텍은 2015년 1월 9일 자신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4개사에게 성과 평가를 통해 최하위 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중 2,244만 원을 환수함. 또한, 자신이 제조하는 내화물의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2개 수급 사업자와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 체결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금 9,250만원을 환수함

심결
요지

원사업자가 성과 평가를 통해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을 일부 환수하는 행위 및 단가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도 소급하여 단가를 인정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의 감액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됨

시정명령, 과징금 1억 3,000만원

사례 03

평화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고무호스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유상 사급으로 공급하고 수급사업자는 그 원자재를 가공하여 평화산업에게 납품하며, 평화산업은 매월말 원자재 공급대금을 공제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음. 2009년 11월부터 평화산업과 수급사업자 간에 원자재 공급수량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였고 평화산업이 일방적으로 공제금액을 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

심결
요지

원자재의 공급과 원자재를 사용하여 가공되는 과정을 볼 때 평화산업의 수량 결정에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평화산업이 주장하는 수급사업자의 자재반출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제금액을 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함

시정명령

사례 04

(주)한림은 2018년 4월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위탁과 관련하여 그 작업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 약 0.4%~4% 인하하기로 해당 하도급업체 A사와 합의하였으나 하도급업체 A사가 이미 납품한 물량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기존 단가 적용시 보다 약 111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함

심결
요지

(주)한림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 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소급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함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 부과

사례
05

(주)동아정밀은 2016년 9월~ 2019년 6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출하 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348백만원을 감액하고 2018년 6월~ 2019년 1월 기간동안 클레임 비용 공제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백만원을 감액함

심결
요지

(주)동아정밀은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Q

물량이 증가하였는데 당초 하도급계약에서 대금 변동은 없는 것으로 특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A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당초 계약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대금을 증액시켜주는 것이 타당함

Q

당초 입찰시 교부하였던 사양 조건이 변경되어 하도급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변경계약 체결로 가능한 것이 아닌지?

A

계약의 주요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작업 변경 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임. 또한, 하도급계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감액이 될 때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발급해 주어야 함

Q

환율, 소재 등 가격변경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이후 정산하여 단가 소급하는 것이 부당감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A

원칙적으로 금지됨. 단, 법 위반여부는 단가감액과 증액이 동등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객관적 기준 여부,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 가능함

Q

발주 후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하도급대금에서 하락분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A

수급사업자의 다른 귀책 사유 없이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감액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Q

환차손을 이유로 대금 결제수단(원화 및 달러화)을 임의로 변경하여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한 법 적용은?

A

계약기간 중 이미 납품 완료된 물량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제수단 임의변경은 부당함. 단,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신규 납품분부터 결제수단을 원화 또는 달러화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1)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하도급법 제5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2) 적용기준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위탁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수리시공 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한 경우

- 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요구가 합리적이고 구속력 있는 요구이어야 함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계약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원사업자가 고가의 부품 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매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또는 시공의뢰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위탁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을 위하여 특정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1)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하도급법 제8조)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안 됨(하도급법 제8조 제1항)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검사 완료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하도급법 제8조 제2항)
-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함. 다만 이권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간주(하도급법 제8조 제3항)

2)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①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 ③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 ④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

※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무리한 납기를 설정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차후에 납기 지연을 이유로 한 수령 거부나 지체상금 공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바로 이의를 제기하여 서류상으로 수정토록 해야 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시키거나 또는 발주서 등을 즉시 반납하여 책임을 면해야 함
-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물품의 내용이 발주 시 위탁 내용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계약서의 위탁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검사 기준이 불명확하여 납품받은 물품의 내용이 위탁 내용과 상이한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령거부 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하여 납기 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 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률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기 통보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 정해진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여 지연 납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작업장에서 검사한 결과 기준에 상당히 미달된 하자품인 경우
 - 발주서 및 시방서와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등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

[심결례]

사례 1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 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 및 변경했음

심결
요지

삼성중공업은 위탁 변경 시스템(이하 PCR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게 위탁취소 및 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음. 또한, PCR시스템에는 위탁 취소 및 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협력사에게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

시정명령, 과징금 36억원 및 법인 고발

○ 부당 반품의 금지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1) 부당 반품의 금지(하도급법 제10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시켜서는 아니 됨.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치 아니함(하도급법 제10조 제1항)

2)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반품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하도급법 제10조 제2항)

- ① 회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②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불합격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납품받은 상품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하자 등이 있어 목적물 수령 또는 인수한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인수한 목적물이 주문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 인수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인수 또는 수령한 목적물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아 자기가 당해 물품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여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심결례]

사례
이

(주)신성이엔지 등은 2016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2016년 5월 수령하였으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 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신고인에게 반품함.

심결
요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수령한 날로부터 578일이 지난 후 물품을 반품한 (주)신성이엔지의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함

시정명령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5배상제 대상



1)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함(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 기술유용의 경우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벌점 5.1 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2) 적용기준

- '기술자료'(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①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②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의미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3)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서면 기재 사항

-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 비밀유지 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및 일자
-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공정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 표준서식 보급

○ 기술자료 제공 요구 핵심 요약

1) 기술자료의 범위

- 공개된 자료라도 기술자료가 될 수 있으며 도면은 대부분 기술자료로 인정됨
- 완성품을 만들어 낼 정도의 자료가 아니라 제조나 생산에 참고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해 주는 정도의 자료라도 기술자료임

2) 기술자료 유용의 해석

- 100%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형하여 참고, 보완, 벤치마킹도 사용한 것으로 인정
- 결과적으로 공급처를 변경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유용으로 인정

3) 과징금 산정

- 기술자료가 구분되고 수급사업자, 유용일시, 장소, 대상, 목적을 달리한다면 과징금을 개별 산정

4) 손해배상 청구 관련

- 법원은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에 따라 직권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며 기술유용,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손해액의 최대 5배)
- ※ 공정거래법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 “법원은 손해액을 입증이 매우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
- 기술자료 미제공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로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

■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심결례]

사례
01

현대중공업은 20여 년간 핵심 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온 글로벌 강소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사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해당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여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음.

심결
요지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고, 요구과정에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하도급법에 위반됨.

과징금 9억 7,000만원

사례
02

엘에스엠트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제조 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데 유용하고 수급사업자에게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였음.

심결
요지

엘에스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연구 노트를 요구하면서 기술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음.

시정명령, 과징금 13억 8,600만원

사례
03

엘지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 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음.

심결
요지

엘지전자는 5개 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시정명령, 과징금 44백만원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및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하도급법 제12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예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해서는 안 됨

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2)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3) 적용기준

-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당해 하도급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에 사용하거나 전매한 경우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 결제청구 가능
- 수시로 기성이 발생하는 장기계약 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됨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사게 하고, 그 물품 대금 등을 목적물을 납품하기도 전에 전액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 지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원사업자가 납품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실제로 투입한 물량보다 더 차감하는 경우(예: 1회 기성금 지급시 전액 차감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사용 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한 것을 당해 하도급 작업 이외의 작업에 사용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물품대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급사업자가 전매한 경우 원사업자가 그 물품대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하고, 납품(기성)이 있을 때 마다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투입한 물량만큼을 납품대금(기성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한 원재료나 장비를 훼손하거나 또는 손실을 발생시켜 납품해야 할 목적물의 제조가 불가능하여 조기결제하는 경우

[심결례]

사례
01

현대삼호중공업(주)는 (유)한국특수산업, (주)WD중공업, (주)태형중공업, 삼강에스피(주)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파이프 피스 도장을 제조위탁함에 있어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외에 추가로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음.

심결
요지

피심인은 지급보증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하여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였음.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원사업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임.

시정명령

사례
02

대주건설(주)은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아파트 49세대(주로 1, 2층)를 20개 수급업자에게 배정 분양하여 자신이 분양하지 못한 아파트 분양을 수급업자에게 전가 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분양을 위한 자금 부담은 물론 당초 분양가 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전매하거나 제3자가 분양 받도록 주선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지게함.

심결
요지

협의 없이 위탁 최소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위탁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 과징금 5억 9천만원

Q

원사업자가 유상 지급한 원재료의 대금결제에 대하여 하도급대금과 상계하지 않고 별도로 일괄결제하는 방법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A

하도급대금과의 상계여부를 불문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시보다 빨리 결제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소지가 있음. 즉 별도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유상자재 대금을 당해 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보다 조기에 결제하도록 하면 안됨

○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1)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하도급법 제17조)

- 원사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①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②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③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 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 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하도급계약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방적으로 대물 변제한 경우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부득이 대물 변제한 경우

[심결례]

사례
이

후지카 대원전기(주)는 (주)두발가스엔지니어링 등 7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억3천234만9천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물품(석유난로 등)으로 지급함

심결
요지

피심인이 (주)두발가스엔지니어링 등 7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자기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 1억3천234만9천원을 물품으로 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7조 위반

시정명령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1)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하도급법 제18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됨

2)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 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 사업자의 경영상 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경영상의 정보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 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 별 매출명세서 등)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

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 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3) 정당한 경영상 정보 요구 행위 예시

- ① 원사업자가 관계법령 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지급 또는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금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②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③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④ 양산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⑤ 원사업자가 법 제33조의3에 근거한 협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인사에 간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경우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 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시하는 행위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유하는 행위
 -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지원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일정한 현금결제비율로 지급하는 행위
 - 인건비·복리후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행위
 - 직업교육·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행위
 - 상기 이외의 행위로서 효율성 증진·경영여건 개선·소속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1) 보복조치의 금지(하도급법 제19조)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②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③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 ④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수급사업자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등록을 해제하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수급사업자의 가격·품질·공기 등이 다른 수급사업자에 비해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주기회 제한 또는 거래를 단절하는 경우

2) 탈법행위의 금지(하도급법 제20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경우
-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심결례]

사례
01

흥화공업(주)는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부분 공사를 삼림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하였으나 삼림건설(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면 지연교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 바, 익년도 협력업체 등록심사에서 삼림건설(주)를 협력업체에서 제외.

심결
요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자기가 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바, 피심인은 협력업체 등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삼림건설(주)가 공사 시공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별로 C 또는 D등급으로 판정하였으며, 평가서에 같은 평점을 받은 타 사업자는 협력업체로 인정하면서 삼림건설(주)만 제외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한 행위는 보복조치로서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시정명령, 고발

6. 발주자의 의무사항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1)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하도급법 제14조)

- 발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법 제14조 제1항)

-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④ 원사업자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14조 제3항)

-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함(법 제14조 제4항)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4조 제5항)
-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하도급법 제14조 제6항)
- 재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함(법 제2조 제10항)

2) 적용기준(하도급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

-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어야 함(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외)
-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합의는 반드시 3자 간에 동시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목적적인, 순차적인 직접 지급 합의도 유효)
-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는 하도급 기성분의 총액이 2회의 기성분에 해당할 때임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기지급한 금액은 제외
-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발생(의사표시의 도달 증명 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음)
-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시 민사집행법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 가능
-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부담

3)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범위

- 직접 지급해야 할 금액의 확정
 - ① 직접 지급금액의 확정이 직접 지급 의무의 전제이며, 직접 지급금액은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될 수 있을 것임
 - ② 원사업자의 비협조 등으로 확정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의 합의에 의할 수 있을 것임
- 발주자의 직접 지급 한도
 - 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 범위임
 - ②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미공제금이 남아있을 경우, 발주자는 직접 지급 하기에 앞서 미공제 선급금을 상계하고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발주자가 명백히 직접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직접 지급액이 기성미확인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

[심결례]

사례 01	씨티씨는 원사업자에게 골리앗 크레인 중 일부시설의 제조위탁을 하고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와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씨티씨는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음.
심결 요지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 합의를 하였을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함.
시정명령	

7. 하도급법 주요 FAQ

1) 하도급거래란 무엇인가요?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란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 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 위탁, 용역위탁을 받는 것을 수급사업 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는 것을 제조 또는 수리 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하 도급법 제2조 1항) 입니다.

2)중견기업도 하도급법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하도급법 중 대금과 관련된 부분은 중견기업에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래하는 상대방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대금지급에 관해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상대방입니다.

(적용 내용 : 60일 이내 대금지급,현금화 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어음할인료, 어음 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지급)

3) 중소기업, 대기업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 하도급법상에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자의 정의 등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5천억원 미만 인 사업자 중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 인 기업 등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하도급법 상의 서면교부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하도급법에서 지정한 필수서면 교부 대상은 아래의 7가지입니다.

① 기본 계약서 (추가/변경계약서, 검사기준서 포함)

- ② 하도급 계약 확인서면
- ③ 하도급 대금 감액서면
- ④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 ⑤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⑥ 검사결과 통지서
- ⑦ 고객사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5) 계약서 상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하도급법의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의 6가지 입니다.

- 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내용
- ② 목적물 인도시기 및 장소
- ③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 ④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⑤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자재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제공대 가, 대가 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⑥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6) 용역하도급의 경우도 용역 종료 후 월말에 발행하고 60일 이내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 용역하도급의 경우 역무의 공급과 지적성과물과 관련된 용역이 각기 다릅니다. 유지 보수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역무가 종료된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파악하므 로 계약기간이 월간 단위인 경우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기준 으로 60일 이내에 대금 을 지급, 즉, 10월15일에 검수 요청을 해서 10월20일에 합격처리 후 10월 31일에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10월15일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7) 담당자의 실수로 대금지급이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외상매출담보대출(이하 외담대) 형태로 지급한 경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은 상의 하여 만기를 조정해서 정상 지급시점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급일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경우라면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여야 하고 외담 대의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는데 사전에 지급일 자 조정이 되지 않았다면 어음 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법에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 하도급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당한 단가란 “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단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가 혹은 최저가 입찰시 최저가격, 이전 계약이 있을 경우 이전 가격에 원재료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단가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최저가 입찰시 최저가 보다 낮은 가격,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전년 대비 5% 인하 등으로 설정한 목표 단가까지 단가를 낮추는 경우에는 부당한 단가결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 경쟁입찰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중인데 매출이 증가하여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부품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입찰 시 2위 업체에게 현재 거래업체 수준의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은 하도급법상의 문제가 없나요?

- 현재 납품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협상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물량 등을 정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업체와 입찰 및 계약 시에 확정된 물량을 보장 하여야만 합니다.

8. 하도급 위반시 제재 유형

단계	제재의 종류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시정권고, 특약 삭제나 수정, 시정명령(작위, 부작위 등)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 과징금부과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법위반 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 • 상습 법위반자 명단 공표(법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 입찰제한(3년간 벌점 5점 초과), 영업정지 요청(3년간 벌점 10점 초과)
행정 질서벌	• 과태료 부과 : 2억원 이하 - 허위자료 제출 : 사업자 1억원 이하, 개인 1천만원 이하 - 조사거부 : 사업자 2억원 이하, 개인 5천만원 이하 - 서면실태 조사 : 사업자 500만원 이하
사법적 제재 (공정위고발)	• 하도급대금 2배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 - 경영간섭 - 탈법행위 위반자 • 3억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 • 3배 손해배상 책임(4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 부당단가인하(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및 감액금지) - 부당발주취소(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 • 5배 손해배상 책임 - 기술자료 유용금지 • 원칙적 고발(5년간 법위반으로 경고이상 3회 이상 & 벌점 6점 초과) •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1. 양벌규정

1) 규정내용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31조)

2) 규정취지

- 양벌규정이란, 법위반행위를 직접 행한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므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 범죄능력이거나 수형능력이 부인된다.
- 따라서, 법인이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은 부과할 수 있다.
- 하도급법처럼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을 둔 취지는 특히 사전에 법위반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보복조치에 대한 벌칙 강화(법 제30조)

- (1) 하도급법상 벌칙에는 형벌인 벌금형이 있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이 있다. 즉, 형벌은 하도급법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 과태료는 조사의 거부·방해 등 하도급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절차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2) 벌금부과에 관한 권한은 사법부에 있는 것이므로 검찰의 기소에 의하여 법원에서 벌금액을 확정하여 부과한다(약식기소의 경우 대개 검찰이 청구한 금액으로 결정됨).

◆ 벌금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0조 제1항).
 - 서면의 사전 발급 및 서류보존규정에 위반한 자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선급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 부당한 수령거부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기성 및 준공검사규정에 위반한 자
 - 부당반품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물품구매대금 등의 조기결제청구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하도급대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에 위반한 자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에 위반한 자
-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0조 제2항).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보복조치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탈법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0조의2)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 청취를 위한 출석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③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공시한 자

■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요청권(법 제32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거래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법 제35조)

- 기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여 유용한 경우에 적용하였던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기술 탈취는 5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과징금 부과

- 일반원칙
 -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 금액이 많은 경우, 위법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 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징금액 산정 단계

① 1단계 : 기본산정기준

-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최저 20% ~ 최고 80%)을 곱하여 산정

② 2단계 : 1차 조정

- 위법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경고이상을 받고 별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가중.
-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의한 조정: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가중

③ 3단계 : 2차 조정

-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가중비율(최대 50%미만)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최대 50% 이내)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뺀

④ 4단계 : 부과 과징금

- 조정과징금의 50% 까지 감액 또는 면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과징금 납부능력, 시장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4대 불공정 하도급 신고 포상금제(법 제22조,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①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

-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법 제4조), 부당한 위탁 취소(법 제8조), 부당반품(법 제10조), 감액(법 제11조), 기술유용(법 제12조의 3)행위이다.

② 신고 포상금 수령 적격

-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신고된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 해당 법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③ 지급 시기

- 신고된 행위와 관련하여 법위반 행위로 의결(재결)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지급한다.

9. 하도급법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 공정거래 자율준수 (CP) Checklist

1 목 적

공정거래 관련 업무 부서를 대상으로 법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을 점검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방 법

체크리스트 항목을 기준으로 자율점검 실시

3 작성요령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세부 위반 사항에 대해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함

O - 점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X - 점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 업무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본 체크리스트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각 법에 대표적인 사항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규의 위반 리스크가 없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

※ 체크리스트를 점검함에 있어 계약서, 품의서, 검토서류, 이메일, 결과보고서 등 관련된 문서를 필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항목	체크리스트	사실 여부		
		O	X	해당 없음
제2조 (정의)	하도급 협력사 선정(거래) 시 사내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 하였습니까?			
제3조 (서면 발급 및 보관)	용역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 계약서 체결 또는 변경 서면을 교부하였습니까?			
	계약서 외 별도 항목을 추가할 경우 사전 검토를 받았습니까?			
	하도급 거래관련 서면(계약서, 발주서, 합의서 등)을 3년이상 보관하고 있습니까?			
제3조의 4 (부당특약 금지)	계약 조건 내 협력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있습니까?			
	책임분담에 관해 당사에게만 유리한 조항이 있습니까?			
	분쟁발생(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 시 결과에 관계없이 관련 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당사 요구 시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무조건 제출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습니까?			
제4조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협력사와 상호 협의하여 대금을 결정하였습니까?			
	계약 기준보다 물량이 감소하였지만, 별도의 상호 협의 없이 기존 물량의 견적가로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탁 물량 및 거래 조건 등을 속이고 하도급 대금을 결정 하였습니까?			
	경쟁적자 등 당사의 일방적인 사유로 협력사에게 불리한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쟁입찰 시 최저가 입찰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의계약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의 정상이 보다 낮은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항목	체크리스트	사실 여부		
		O	X	해당 없음
제8조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협력사와 협의 후 진행 하였습니까?			
	협력사에게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13조 (하도급대금 지급)	위탁 완료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합니까?			
제18조 (부당한 경영간 섭의 금지)	협력사의 재하도 계약에 있어 업체 선정, 계약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가에 관한 정보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19조 (보복조치 금지)	당사의 경쟁사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축소하거나 제한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11조 (감액금지)	당사에 대한 손해 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협력사의 책임(실수, 과오)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도급대금 감액 시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대상 물량, 감액 금액, 감액방법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서면(합의서)을 하도급 사에게 사전에 교부합니까?			
	대금 인하 협의 후 합의 전 시점에 대해서도 대금을 소급하여 적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16조의 2 (원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협력사로부터 원자재 또는 용역 금액 인상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받아 반영(인상)한 사실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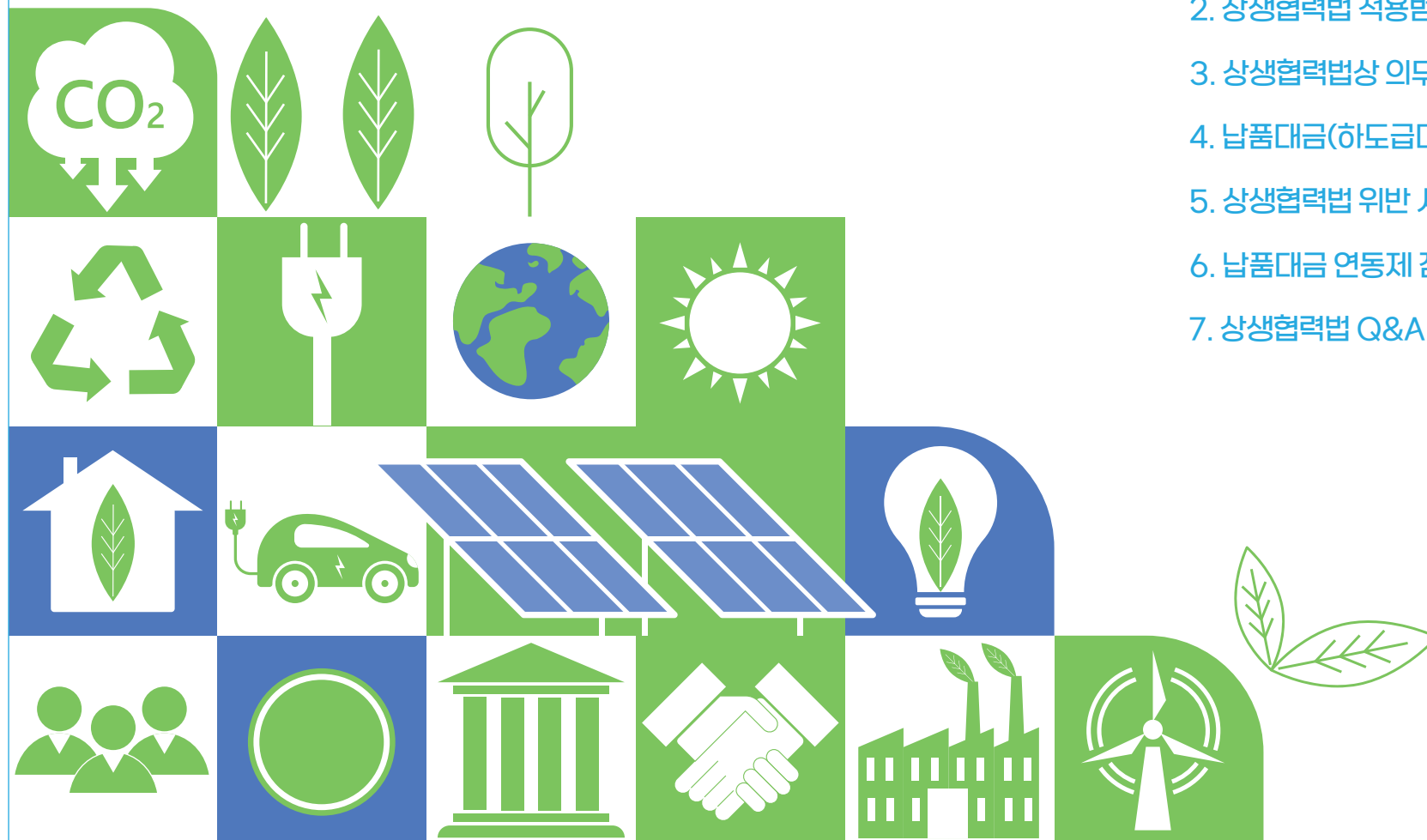
입찰 담합 피해 예방 점검

항목	체크리스트	사실 여부		
		O	X	해당 없음
입찰 설계 준비 과정	입찰 참여업체 간 회합이 용이하도록 불필요하게 발주처 주관 입찰 설명회 등 모임 기회를 자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득이한 경우 공급사를 분산시키고 되도록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			
	입찰 참여 예상업체가 입찰에 미참여 하겠다고 한 사례는 사유를 확인하였습니까?			
	각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독자적 입찰 참여 결정 증명서를 사전 제출하도록 고지하였습니까?			
	입찰담합 가담 시 손해배상청구, 공급사 제재 등 후속 조치사항을 참여업체에 고지하였습니까?			
	타 업체들의 구체적 담합 징후 파악 시 공급사가 취해야 할 업무 프로토콜을 안내하였습니까?			
입찰 시행 직후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만 유찰이 잦은 업체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까?			
	낙찰 후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사례와 사유를 파악하였습니까?			
	투찰 가격의 단위나 숫자 오류가 복수 업체 간에 유사하게 발견되는 경우를 확인하였습니까?			
	라운드 반복 시에도 투찰 가격이 변동 없는 둘러리 입찰 의심 사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입찰 종료 후	입찰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은 입찰건은 입찰 종료 후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화 하였습니까?			

06

상생협력법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POSCO PH Solution Compliance Guidebook



1. 상생협력법의 목적
2. 상생협력법 적용범위
3. 상생협력법상 의무 및 금지행위
4.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5. 상생협력법 위반 시 제재
6. 납품대금 연동제 점검 포인트
7. 상생협력법 Q&A



1. 상생협력법의 목적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상생협력법 제1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위수탁거래에 적용됨

2. 상생협력법 적용범위

1) 적용대상

- 상생협력법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주로 지켜야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음
 - 위탁기업 :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포함하며, 수탁기업인 중소기업보다 매출액이 작은 중소기업도 해당
 -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

2) 하도급법과 비교

- 상생협력법이 규율하는 수탁·위탁거래와 하도급법에서 규율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 유형 및 방식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적용대상 기업, 위탁의 종류 및 일부 금지 규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적용범위 비교]

구 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적용대상 기업	상생법의 위탁기업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영위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을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하는 자(상생협력법 제2조)	하도급법의 원사업자는 대기업과 직전년도 매출액이 다른 중소기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하도급법 제2조)
적용거래 범위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6유형)을 업으로 하는 자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업무(5유형)를 대상으로 하므로 각각에 대하여 모두 30유형의 거래	총 30개 유형 중에 제조, 판매, 수리, 건설업자의 제조위탁(4가지), 수리업자의 수리위탁,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용역업자의 용역위탁 등 총 7가지 거래 유형만을 대상

3. 상생협력법상 의무 및 금지행위

구 분	하도급법
약정서, 수령증 발급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함 -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 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함
납품대금 연동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목적물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변동하면 사전에 협의 하여 정한대로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비밀유지 계약 체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기술자료 제공 목적 및 범위, 비밀유지의무 내용,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
납품대금 지급	- 위탁기업은 납품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대금지급기일로 봄 -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이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검사 및 불합격 통보 의무	위탁기업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해 수탁기업 납품 물품을 신속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에 대해서는 불합격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함
납품대금 결정	- 위탁기업은 수탁기업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량을 거부하거나 납품 대금을 깎아서는 안됨 -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해서는 안됨
발주	-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 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해서는 안됨 -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해서는 안됨
기술자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됨 -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됨 -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됨

기술자료

-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제28조의11 제1항 신설) 수탁 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가능
- 물건 설비의 폐기 제거 등의 청구(제28조의11 제2항 신설)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함께 청구 가능
- ※ 위 신설 금지청구권 제도 '24.12.11. 시행

4.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1)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개요

-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이란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변동하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대로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상생협력법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2022.12.08. 국회본회의 통과
-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023.07.04. 시행
-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 : 2023.10.04. 시행

- 하도급법 : 현재 관련 법안 개정안 국회 논의 중

-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현재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도급 위수탁 거래 관련 핵심 중점 추진사항

2)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내용

- 물품등 제조 위탁 시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 부과

- '주요 원재료' :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 ‘조정 요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 해정한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
-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어야 함
- 탈법행위 금지: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 금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

5. 상생협력법 위반 시 제재

1) 3배 손해배상(기술유통의 경우 5배까지)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기술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상생협력법금지행위를 관계 기관에 고지하는 행위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어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손해를 입은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기술유통의 경우 5배까지 가능)

2) 공정위에 대한 조치 요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 ~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함

3) 입찰참가자격제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법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해 별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별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4) 형사처벌

-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기술자료의 임치등록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조정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정명령 불이행 사실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그 대표자 등과 함께 처벌

5) 과태료

- 일시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6. 납품대금 연동제 점검 포인트

점검포인트

-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 현황 점검
 - ▶ 주요 원재료 비용이 대금의 10% 이상인 거래 확인
-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신규 체결 또는 갱신이 예정된 거래 점검
 - ▶ 해당 거래의 거래상대방과 연동제 적용여부에 대해 미리 협의
- 거래 상대방에게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고, 협의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을 증빙으로 확보
- 거래 상대방이 연동제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내용 보완 필요
 - ▶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기준시점/비교시점, 조정주기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거래 상대방과 연동제 미적용을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수탁기업)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
 - ▶ 회의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7. 상생협력법 Q&A

Q

중견기업도 수탁기업으로서 연동제 적용 가능한가?

A

중견기업은 원칙적으로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아님

-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다만,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기업이 될 수 있음
- 중견기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Q

2~3차 협력사까지도 연동제 적용이 되는가?

A

대기업의 1, 2차 협력사가 2, 3차 협력사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다만, 1, 2차 협력사(위탁기업)가 소기업인 경우 등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할 의무에서 제외됨

Q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기본거래계약서부터 연동제 내용이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A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일인 '23년 10월 4일 이후 새롭게 체결, 갱신되는 수탁, 위탁거래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Q

수탁기업이 요구하지 않아 위탁기업이 연동제에 따른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위반인가?

A

연동 약정은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요건, 조정주기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대금이 조정됨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수탁기업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지 않은 행위는 법 위반 행위 가능성이 있음

Q

납품대금 연동제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간의 관계는?

A

납품대금 연동제는 조정요건이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한정되고, 계약체결시에 정한 약정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자 모두 보완적으로 운영됨

구 분	납품대금 연동제	조정협의제도
대상	주요 원재료의 비용	공급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납품대금 조정협의 시점	사전 (계약체결시)	사후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시점	의무	자율 다만, 수탁기업 신청시 위탁기업 이 협의에 응할 의무 존재
제재	약정서 미기재 과태료 (1천만원) 및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	조정협의 거부 또는 게을리 하 는 경우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

Q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A

(약정서 미발급)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미발급 하는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탈법행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탈법행위 :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상생협력법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리스트	사실 여부		
		O	X	해당 없음
계약 체결	· 수탁기업에 대한 제조 등 위탁시 위탁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발급했는가?			
	·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 기술 자료 및 비밀유지의무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는가?			
	· 납품 대금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낮게 정하지는 않았는가?			
거래 과정	· 수탁기업이 제공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지는 않았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발주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중단하지는 않았는가?			
대금지급 및 검수	· 수탁기업 납품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사기준을 바탕으로 신속히 검수하였는가?			
	· 수탁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 하지는 않았는가?			

2026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POSCO PH Solution Compliance Guidebook